

목차

I.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 목적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 2023년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3

II. 2023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

1.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도비> 16
-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신규)<도비> 17
- ③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비예산> 19
- ④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신규)<도비> 20
- 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21
- ⑥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도비> 23
- ⑦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 24
- ⑧ 국공립 신임원장·0세아전용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도비> 27
- ⑨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29
- ⑩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도비> 37
- ⑪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도비> 39

2.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 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국·도비> 41
- ②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비예산> 43
- ③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비예산> 45
- ④ 어린이집 환경개선<국·도비> 46
- ⑤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신규)<도비> 48
- ⑥ 어린이집 평가<비예산> 49
- ⑦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운영<도비> 51

⑧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55
⑨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도비>	56
⑩ 가정·민간 등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	60
⑪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도비>	63
⑫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신규)<도비>	64
⑬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지원<도비>	65
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도비>	66
⑮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 배치<도비>	68

3. 양육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국·도비>	70
② 누리과정 운영 지원<도비>	72
③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74
④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비>	76
⑤ 가정양육수당 지원<국·도비>	78
⑥ 부모급여 지원<국·도비>	83
⑦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도비>	85
⑧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도비>	88
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도비>	89
⑩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도비>	91
⑪ 시간제보육 지원<국·도비>	93
⑫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99
⑬ 교재교구비 지원<국·도비>	102
⑭ 차량운영비 지원<국·도비>	103
⑮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국·도비>	104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권리존중 확산

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105
②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도비>	109
③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도비>	112

④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비>	115
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국·도비>	119
⑥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국·도비>	123
⑦ 교사겸직원장 지원<국·도비>	127
⑧ 대체교사 인건비 <국·도비>	130
⑨ 보조교사 인건비 <국·도비>	136
⑩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국·도비>	141
⑪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도비>	145
⑫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도비>	146
⑬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국·도비>	147
⑭ 영아전문(심화)·다문화전문 교육 운영<비예산>	148
⑮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전문성 강화교육<도비>	150
⑯ 어린이집 보육행정실무사 청년인턴 지원<국·도비>	152

Ⅲ. 부 록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156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관 현황	157
○ 보육료 지원기준표 · 처우개선비 지원표	158
○ 주요 보육통계표	159
○ 자치법규(소관조례)	160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175

I . 2023년도 보육사업 안내

목 적

이 안내(지침)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보육 조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제반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일반사항

- 보육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은 이 안내(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안내를 적용한다.

□ 어린이집 세부운영 규정

- 시·군 및 각 어린이집은 필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이 안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원장 직책급 예산편성 기준

○ 어린이집 규모별(현원기준) 원장의 직책급 한도액

- 20인 미만 : 월 350,000원
- 20~59인 : 월 400,000원
- 60~99인 : 월 450,000원
- 100인 이상 : 월 500,000원

※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은 의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그 외 어린이집은 권고

* 공공형 어린이집은 '23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이미 시행 중인 시군은 자체기준으로 추진, 미시행 시군은 도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시 자체기준 마련 시행 가능

○ 예산편성 : 매년 12월 ~ 익년 2월에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 집행 : 매월 집행 시점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

□ 기타 적용사항

○ 보조금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으로 한다.

○ 각종 도 특수시책사업 추진 시 평가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2023년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1.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도비) ※ '23년 신규사업						
사업개요	○ <신 설>	○ 지원내용				
		구 분	사업량	지원내용	지원기준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 전환지원	20 개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민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지원	최대120 백만원 /개소당	
		신축지원	10 개소	지역 내 국공립 「설치비용 + 이용률 + 정원충족률」 기준 선정 및 신축비 우선 지원	최대300 백만원 /개소당	
		신규개원 안착지원	165 개소	인건비 등 신규 설치 어린이집 개원 준비업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0백만원 /개소당	신규사업
○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도비) ※ '23년 신규사업						
사업개요	○ <신 설>	○ 사업개요 - 사업추진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 사업」 연계 추진 - 사업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00명 이하 사업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사업내용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100%) - 지 원 액 : 최대 2억원 ~ 최소 3천만원		신규사업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u>월2,000천원 / 인</u> - 추가반 운영비 : <u>월500천원 / 반</u>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u>월461천원 / 인</u> - 조리원 인건비 : <u>월600천원/인</u>	○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u>월2,099,100원 / 인</u> - 추가반 운영비 : <u>월700,000원 / 반</u>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u>월467,000원 / 인</u> - 조리원 인건비 : <u>월700,000원/인</u>	지원단가 인상			
선정기준 및 절차	○ 참여 기본요건 - 평가인증 ----- (생략) - 어린이집 ----- (생략)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 족률 60% 이상(농어촌 50% 이상) ※ 2021년, 2022년 한시적용(기존 :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 참여 기본요건 - (생략) - (생략)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농어촌 60% 이상) ※ (삭제)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특례 해제			
	○ 세부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 (생략) - 신규 지정시 --- (생략) - (신설)	○ 세부 선정기준 - (생략) - (생략) -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추가지정 불가	지역내 과밀 방지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상	○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B등급 이상	운영 내실화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단가</th> <th>세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td> <td>2,000천원/인</td> <td>(생략)</td> </tr> <tr> <td>추가반 운영비</td> <td>600천원/반</td> <td>(생략)</td> </tr> <tr> <td>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td> <td>461천원/인</td> <td>(생략)</td> </tr> <tr> <td>조리원 인건비</td> <td>600천원/인</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000천원/인	(생략)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반	(생략)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61천원/인	(생략)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생략)	○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원단가</th> <th>세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td> <td>2,099,100원/인</td> <td>(생략)</td> </tr> <tr> <td>추가반 운영비</td> <td>700,000원/반</td> <td>(생략)</td> </tr> <tr> <td>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td> <td>467,000원/인</td> <td>(생략)</td> </tr> <tr> <td>조리원 인건비</td> <td>700,000원/인</td> <td>(생략)*</td> </tr> </tbody> </table> <p>※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p> <p>*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기준</p> <p>*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p>	구 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099,100원/인	(생략)	추가반 운영비	700,000원/반	(생략)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67,000원/인	(생략)	조리원 인건비	700,000원/인	(생략)*	- 지원단가 인상 - 조리원 인건비 지원기준 명확화
구 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000천원/인	(생략)																															
추가반 운영비	600천원/반	(생략)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61천원/인	(생략)																															
조리원 인건비	600천원/인	(생략)																															
구 분	지원단가	세부사항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2,099,100원/인	(생략)																															
추가반 운영비	700,000원/반	(생략)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467,000원/인	(생략)																															
조리원 인건비	700,000원/인	(생략)*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 (생략) - 1세·2세 혼합반 구성 ————— (생략)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 (생략) - 야간연장 이용아동이 ————— (생략)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 (생략) - (신설)	○ 지원기준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u>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u>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운영정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제외 기준 마련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	○ 지정취소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생략)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 (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시 인가변동사항 시·군 확인 후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는 유지가능	○ 지정취소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생략)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 (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 또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동일 행정동 외 이전시 인가변동사항 시·군 확인 후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는 유지가능	재개발, 재건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 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가제 D등급 (2022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평가 참고) ※ (신설)	· 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평가제 C등급 이하 (2023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평가 참고) ※ 평가인증기간 만료시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 유지가능 단, 평가 후 B등급일 경우에만 지정 유지	지정유지기준 상향 (평가제 B등급)에 따른 지정취소 기준 강화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2.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도비) ※ '23년 신규사업			
사업개요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 사 업 량 : 200-250개소 - 사 업 비 : 600백만원 *자부담 50% (도비 180/시·군비 420) - 지 원 액 : 정원 20인이상 최대 3백만원, 20인미만 최대 2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집의 안전성 및 노후화 등에 따른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 	신규사업
○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C등급 이 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 지원제외대상 : 조리원 인건비(국·도비) 기지원 중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 단체등·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 이집 등 *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정부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 지원제외대상 -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 : 국공립·사회복지 법인·법인단체등·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평가인증 취소 또는 평가제 D등급 어린이집 	평가미인증(대표자변경, 신규개원 등) 어린이집 제한 기준 완화
사업추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 보험에 가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 급여제도 설정기준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 보험에 가입 및 납부완료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기준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원장의 사용자부담금 체납으로 지원제의 후 체납월 익월까지 납부완료 시 소급지원 	사용자의 체납으로 인한 조리원의 불이익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평가제 D등급 이하 등으로 지원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평가제 D등급 이하 등으로 지원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까지 지원 <p>《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또는 평가제 A,B,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B,C등급) 어린이집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 복지부 통보일)의 익월 부터 미지원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미지급 <p>※ 범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미지급</p>	평가제(평가인증)에 따 른 지원 중단 기준 명 확화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비) ※ '23년 신규사업																																	
사업개요	○ <신 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 사 업 량 : 60~75개소(300~375대) - 사 업 비 : 750백만원 (도비 225/시·군비 525) - 사업내용 : 창문형 공기순환(정화)장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1대 설치비 지원 * 공기순환(정화)장치 운영 관련 기타 필요비용은 어린이집 자부담	신규사업																														
3. 양육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개요	○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수납한도액 변경 으로 지원단가 인상 (2023. 3월부터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민간 (3세)</th> <th>민간 (4,5세)</th> <th>가정 (3-5세)</th> </tr> </thead> <tbody> <tr> <td>수납한도액</td> <td>385</td> <td>362</td> <td>388</td> </tr> <tr> <td>정부지원 보육료</td> <td>280</td> <td>280</td> <td>280</td> </tr> <tr> <td>차액보육료</td> <td>105</td> <td>82</td> <td>108</td> </tr> </tbody> </table>	구 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85	362	388	정부지원 보육료	280	280	280	차액보육료	105	82	108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민간 (3세)</th> <th>민간 (4,5세)</th> <th>가정 (3-5세)</th> </tr> </thead> <tbody> <tr> <td>수납한도액</td> <td>405</td> <td>382</td> <td>408</td> </tr> <tr> <td>정부지원 보육료</td> <td>280</td> <td>280</td> <td>280</td> </tr> <tr> <td>차액보육료</td> <td>125</td> <td>102</td> <td>128</td> </tr> </tbody> </table>	구 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405	382	408	정부지원 보육료	280	280	280	차액보육료	125
구 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385	362	388																														
정부지원 보육료	280	280	280																														
차액보육료	105	82	108																														
구 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405	382	408																														
정부지원 보육료	280	280	280																														
차액보육료	125	102	128																														
○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개요	○ 가정양육수당 - 0~86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급	○ 부모급여 - 0~23개월 ('22년 출생아부터) 영아 35~70만원 지급 ○ 가정양육수당 - 12~86개월 미만 월 10~20만원 지급 ('21년 출생아까지)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23. 1. 1부터 사업내용 변경 시행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대상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22천원 운영비 지원 - 지원받은 운영비 만큼 부모부담 보육료, 필요경비 등 감면 실시 ○ 지원기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매월 1일 현원 기준	○ 사업대상 : <u>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 (영유아, 만0~5세)</u> ○ 지원내용 :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 유아 1월 지원, 영아는 관련 조례 개정 후 ○ 지원기준 : <u>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자</u> ※ 도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료 보호자와 영유아가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사업대상 및 지원 내용 개선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추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는 야간연장 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으로 활용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는 야간연장 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으로 활용 ※ 인건비, 급식비 사용 불가 ○ 어린이집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소급 지원 가능 	사용불가 항목 명확화 및 소급기준 신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별도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개소당 1명 월 2,670천원/인 ○ 지원단가 - 인건비(월 2,000천원), 4대 보험료(월200천원), 퇴직적립금(월170천원), 수당(월 3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별도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개소당 1명 월 2,815천원/인 ○ 지원단가 - 인건비(월 2,120천원), 사용자부담금(395천원), 수당(월 300천원) 	불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지원단가 변경
○ 시간제보육 지원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 (1개반 기준) 인건비·운영비 10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시 인건비·운영비 70%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모두 충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준 ※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건 - 10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충족시 - 70%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충족시 	인건비 및 운영비 차등지원 실적기준 완화
○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추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예) 1월 3일(월), 3월2일(수), 5월 2일(월), 10월 4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예) 1월 2일(월), 3월 2일(수), 4월 3일(월), 7월 3일(월), 10월 2일(월) 	'23년 일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외 - (급식비, 운영비)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외 - (급식비, 운영비)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제외 기준 명확화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권리존중 확산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관리 시 지원) * 생략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관리 시 지원**) * 생략 ** <u>최소 인력풀 인력이 1명 이상(전월 말일 기준)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다수일 경우 인력풀 관리나 인력 확충 담당자 지원 가능('23.3월부터 적용)</u> 	지원대상 명확화																					
사업개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변경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지 원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정부지원</td> <td>반담당 보육(특수)교사</td> <td>월150천 원/인</td> </tr> <tr> <td>원장, 조리원</td> <td></td> </tr> <tr> <td>치료사</td> <td>월400천 원/인</td> </tr> <tr> <td rowspan="2">정부미지원</td> <td>반담당 보육(특수)교사</td> <td>월200천 원/인</td> </tr> <tr> <td>치료사</td> <td>월450천 원/인</td> </tr> <tr> <td colspan="2">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td> <td>월110천 원/인</td> </tr> <tr> <td colspan="2">월급형 대체교사</td> <td>월120천 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원 액	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50천 원/인	원장, 조리원		치료사	월400천 원/인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200천 원/인	치료사	월450천 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 원/인	월급형 대체교사		월120천 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	지원액변경 (차등지원 폐지)
구 분		지 원 액																						
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50천 원/인																						
	원장, 조리원																							
	치료사	월400천 원/인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200천 원/인																						
	치료사	월450천 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 원/인																						
월급형 대체교사		월120천 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																						
사업추진안내 (지원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평일(생략) * 월급형(생략) <문구이동>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u>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u>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신규>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생략) <문구 정비 및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평일(생략)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① <u>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월 5일 이내 휴가,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를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③⑤은 동일 월에 최대 5일까지 인정</u> * <u>신학기 적용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효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지급 가능</u>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p>- <신설> * <신설></p> <p>- 담당반의 <u>이동</u>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u>이동이</u>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u>이동이<삭제></u>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p> <p><u>표<평가인증 (생략) 적용기준></u></p>	<p>※ 월급형(생략) <문구이동></p> <p>- <u>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하여 지원</u></p> <p>* ① <u>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휴원일</u>, ② <u>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u>, ③ <u>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u>, ④ <u>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 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일</u>, ⑤ <u>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일은 근무일수로 포함</u></p> <p>- 담당반의 <u>영유아</u>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u>영유아가</u>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p> <p>※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u>영유아</u>를 실제 (생략) <문구 정비 및 이동></p> <p><u>표<평가인증 (생략) 적용기준> <삭제></u></p>	
<p>사업추진안내 (지원대상 및 방법)</p>	<p>○ 세부 지원대상</p> <p>- 생략 - 생략 - 공공기관(생략)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 (기본보육료 지원기관과 동일)</p>	<p>○ 세부 지원대상</p> <p>- 생략 - 생략 - 공공기관(생략)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 (기관보육료 지원기관과 동일)</p>	<p>문구 정비</p>
<p>○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p>			
<p>사업개요 (지원대상)</p>	<p>○ 지원대상</p> <p>-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관리시 지원) * 생략 ** <신 설></p>	<p>○ 지원대상</p> <p>-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관리시 지원**)</p> <p>* 생략 ** <u>최소 인력풀 인력이 1명 이상(전월 말일 기준)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다수일 경우 인력풀 관리나 인력 확충 담당자 지원 가능('23.3월부터 적용)</u></p>	<p>지원대상 명확화</p>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사업추진안내 (지원대상 및 방법)	<p>○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담임교사(생략) * 월급형(생략) <문구이동> * 신학기(생략) <문구이동>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u>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u>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함<문구조정 및 이동> <p>- <신설></p> <p>* <신설></p> <p>-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삭제>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p>	<p>○ 지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 담임교사(생략)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① 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월 5일 이내 휴가,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포함가능하며, ③~⑤은 동일 월에 최대 5일까지 인정 * 신학기(생략) <문구이동> ※ 월급형(생략) <문구이동> - <u>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하여 지원</u> *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휴원일,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일,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일은 근무일수로 포함 - 담당반의 영유아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영유아가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영유아를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함 <문구조정 및 이동>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사업추진안내 (지원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지원대상 - 공공기관(생략)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 (기본보육료 지원기관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지원대상 - 공공기관(생략)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 (기관보육료 지원기관과 동일) 	문구 정비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평일(생략)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u>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u>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티비」는 아동을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 교사에게 지급함<문구조정 및 이동> - <신설> * <신설> - 담당반의 <u>아동</u>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u>아동</u>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u>아동</u>이<삭제>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평일(생략)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① <u>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월 5일 이내 휴가,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를 근무일수에 포함가능하며, ③-⑤은 동일 월에 최대 5일 까지 인정</u> - <u>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지원</u> * ① <u>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휴원일</u>, ② <u>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u>, ③ <u>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u>, ④ <u>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일</u>, ⑤ <u>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일은 근무일수로 포함</u> - 담당반의 <u>영유아</u>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u>영유아</u>가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u>영유아를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함 <문구조정 및 이동></u>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	-------	-------	------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추진안내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2023년 변경사항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및 문구 조정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담임교사 <small>(연장보육 전담교사 아간연장보육교사)</small>	교사겸직 원장대표자		조리원	
		생략	생략	○	○		x	
		생략	생략	○	○		○	
		생략	생략	○	○		○	
		생략	생략	○	○		○	
		생략	생략	○	○		○	
		생략	생략	○	○		○	
	최우선	생략	생략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	○		○	
	가족상	생략	생략	○	○		○	
		생략	생략	○	○		○	
		생략	생략	○	○		○	
	본인질병 등 사고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1~10일 최대 10일	○	○		○	
모성보호	생략	생략	○	○	○			
	생략	생략	○	○	○			
	생략	생략	○	○	○			
알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	○	○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	○			
<p>* 감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생략) ※ (생략)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취약보육시설 우선 지원 ※ (생략)</p>								
사업추진안내 (지원기준)	○ 지원단가	○ 지원단가					연도변경에 따른 지원단가 및 기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 일 87,140원/인(실제근무일 기으 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2022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변동시 동일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 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 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0,890원)으로 지급 가능, — (생략) ※ 생략 - 조리원 : 일 74,00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250원) 으로 지급 가능, — (생략) ※ 생략 - 운영비(생략) ·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 일 91,410원/인(실제근무일 기준 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2023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변동시 동일적용)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1,430원)으로 지급 가능, — (생략) ※ 생략 - 조리원 : 일 77,00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630원) 으로 지급 가능, — (생략) ※ 생략 - 운영비(생략) · 지원액 						

구 분	2022년	2023년	변경사유
	<p>〈표생략〉</p> <p>※ 인원기준 : 시군 센터별 ‘21.12월말(상반기), ‘22.6월말(하반기)——(생략)</p> <p>· 생략</p>	<p>〈표생략〉</p> <p>※ 인원기준 : 시군 센터별 ‘22.12월말(상반기), ‘23.6월말(하반기)——(생략)</p> <p>· 생략</p>	
사업추진안내 (유의사항)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입면보고 관련 구비서류 제출 불요</p> <p>※ 시·군에서는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u>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연1회 이상 점검·확인</u></p> <p>※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입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u>입면보고 구비서류 불요<문구이동및변경></u></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 생략</p> <p>※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u>인력풀 인력과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입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입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u></p> <p>※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유효기간이 있는 입면서류의 만료일을 확인·관리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재등록과 연도 전환 등 조치 필요</p>	국비사업 기준 준용 및 인력풀 관리사항 규정

Ⅱ. 2023년도 보육사업 추진계획

- 1.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 2.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 3. 양육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권리존중 확산**
-

1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보육의 질 제고

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2

공동주택 단지,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농어촌 지역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 **목 표** :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165개소 이상(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사업량(본예산) : 63개소 (매입 1, 공동주택리모델링 62)
- 사업내용

확충 유형	내용	지원기준
신축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최대 2,157백만원
매입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등	최대 2,157백만원
생활soc복합화	동일 건물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최대 2,157백만원
공동주택리모델링	500세대 이상 국공립 의무설치('19.9.25.시행) 등	최대 150백만원
장기임차(5~10년)	자가소유 민간('18년~)	최대 250백만원
	자가소유 가정('20년~)	최대 150백만원
	자가소유 농어촌 민간('21년~)	최대 250백만원

※ 기자재비 :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7,504,385	24,618,888	29,289,774	13,595,723
국비	36,439,684	13,317,625	15,949,642	7,172,417
도비	16,213,000	5,965,430	7,035,917	3,211,653
시군비	14,851,701	5,335,833	6,304,215	3,211,653

※ 확충실적 : (2020년) 161개소 (2021년) 154개소 (2022년) 151개소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향후계획

- 수요자 중심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신속 개원

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신규)

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2

공보육의 지역간 불균형과 접근성 격차 해소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여 우수 공보육 인프라 확산 및 공보육 품질 제고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량 : 195개소
- 총사업비 : 8,700백만원 ※ 보조율 : 도비 50~100%, 시군비 0~50%
- 사업내용

구분	사업량	지원내용	지원기준
기존 공동주택어린이집 전환 지원	20개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민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지원	최대120백만원/개소당
신축지원	10개소	지역 내 국공립 「설치비율 + 이용률 + 정원충족률」 기준 선정 및 신축비 우선 지원	최대300백만원/개소당
신규개원 안착지원	165개소	인건비 등 신규 설치 어린이집 개원 준비업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0백만원/개소당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0년	2021년	2023년
계	8,700,000	-	-	8,700,000
국비	0	-	-	0
도비	5,850,000	-	-	5,850,000
시군비	2,850,000	-	-	2,850,000

□ 향후계획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
-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률 및 이용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참고 1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률 및 이용률

(기준일: '22.12.31)

(단위: 명, 개소, %)

시군	영유아 현황		이용률	어린이집 개소수		운영률
	전체	국공립		전체	국공립	
계	331,516	75,054	22.6%	9,438	1,326	14.0%
수 원 시	25,590	4,262	16.7	811	70	8.6
용 인 시	27,119	3,362	12.4	713	52	7.3
고 양 시	21,710	5,598	25.8	626	94	15.0
성 남 시	18,699	6,425	34.4	515	103	20.0
화 성 시	25,956	6,076	23.4	772	124	16.1
부 천 시	15,416	2,621	17.0	481	53	11.0
남 양 주 시	17,899	4,398	24.6	532	87	16.4
안 산 시	15,517	2,652	17.1	399	42	10.5
평 택 시	15,518	3,665	23.6	398	71	17.8
안 양 시	12,043	2,585	21.5	352	42	11.9
시 흥 시	16,643	4,792	28.8	460	83	18.0
김 포 시	13,520	3,121	23.1	409	53	13.0
파 주 시	13,050	2,516	19.3	373	39	10.5
의 정 부 시	10,992	2,218	20.2	336	38	11.3
광 주 시	12,565	1,857	14.8	294	30	10.2
광 명 시	6,191	2,111	34.1	199	30	15.1
하 남 시	9,508	3,601	37.9	240	60	25.0
군 포 시	5,781	1,423	24.6	189	25	13.2
오 산 시	7,003	2,502	35.7	215	43	20.0
양 주 시	6,944	1,418	20.4	210	33	15.7
이 천 시	6,327	939	14.8	144	20	13.9
구 리 시	4,003	945	23.6	128	15	11.7
안 성 시	5,365	925	17.2	147	19	12.9
의 왕 시	4,179	1,181	28.3	116	21	18.1
포 천 시	3,380	779	23.0	90	20	22.2
양 평 군	2,220	702	31.6	45	11	24.4
여 주 시	2,037	310	15.2	60	11	18.3
동 두 천 시	2,230	491	22.0	74	8	10.8
과 천 시	2,216	1,005	45.4	51	16	31.4
가 평 군	1,113	268	24.1	34	6	17.6
연 천 군	782	306	39.1	25	7	28.0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사업장 등 운영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이상 고용 사업장
- 설치유형 : 직접설치 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 단독(공동) 직접설치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보육
 - 위탁보육 :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 위탁보육
- 재원부담 : 사업주는 보육 필요 비용의 50% 이상 부담

□ **향후계획**

- ‘22.12.31.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23.1.9 ~ 5.31. / (조사결과 공표) ‘23.5월 예정
- 단독(공동) 직접설치 어린이집 관리 : 300개소(비의무 사업장 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이행 여부 지속 관리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 부과주체
 - 도지사 : 관할 시·군청 중 미이행 사업장
 - 시장·군수 : 그 외 모든 의무 미이행 사업장
- 부과방법 : 이행명령(1·2차), 이행강제금(1·2차) 부과
- 부과금액 :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
 - ※ 단, 회당 최대 1억원 부과
- 부과시기 : 최초 이행명령 → 미이행 시 다시 이행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 시 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2회) (1년간 2회)

[실태조사 불응사업장 과태료 부과]

- 부과금액 : 1회 위반 5천만원,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 시 1억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및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과 저출산 문제 해소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지원 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등 지원
- 사업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대기업,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컨소시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단독 및 2개 이상 컨소시엄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00명 이하의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사업량 : 3개소 ※ '23~'26 총 15개소 목표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23~'26 총 3,000백만원(도비 100%)
- 지원내용 및 기준(안)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지원 한도의 5~10%

설치 형태		지원금 종류	근로복지공단 지원 한도	경기도 지원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대규모기업, 행정·공공기관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어린이집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주 단체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20억원	2억원	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10% (근로복지공단 : 소요비용의 90%)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사업주 단체		10억원	1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단독어린이집			4억원	4천만원	
대규모 기업 공동어린이집 (대기업+계열사)		시설전환비	6억원	3천만원	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5% (근로복지공단 : 소요비용의 60%)

- 지원시기 : 어린이집 준공 이후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지원 완료 후

□ **향후계획**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희망 사업장(중소기업) 수요조사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 설명회 추진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설치비 지원

1-5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보육정책팀 ☎8008-2598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연 혁**

- 시범 운영 : 2011년 7월~
- 본격 운영 : 2012년 7월~
- 운영비 지급기준 변경 : 2018년 1월~ * 운영비 지원 상한액(월 최대 1,000만원) 폐지

□ **사업개요**

- 대 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일부 제외)
- 기 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650개소
- 총사업비 : 23,066백만원
- * 보조율 : 도비 75%, 시군비 25% (차등보조)

* 보건복지부 차등보조를 적용 / '22년 이양, '26년까지 5년간 국비금액 행안부 보전금으로 충당

□ **지원기준** * 신규 및 재선정 기관 및 기존 운영 중인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 지급

구 분		단 가	기 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40만원	기본보육반 1개반당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반당
	교육·환경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8,634,417	22,853,362	22,715,421	23,065,634
국 비	13,211,000	13,211,000	-	-
도 비	45,471,312	6,250,612	19,330,700	19,890,000
시군비	9,952,105	3,391,750	3,384,721	3,175,634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2.12.월말
계	641개소(증31)	639개소(감2)	644개소(증5)	623개소(감21)

참고

시·군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22. 12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개소	가정	민간	법인·단체 등	비고
합 계	623	417	202	4	
남 부	487	328	155	4	
수원시	40	34	6	0	
성남시	32	32	0	0	
안양시	33	26	7	0	
부천시	58	46	12	0	
광명시	20	17	3	0	
평택시	28	15	13	0	
안산시	34	15	18	1	
오산시	31	26	4	1	
시흥시	29	22	7	0	
군포시	12	12	0	0	
의왕시	5	3	2	0	
하남시	8	0	8	0	
용인시	34	24	9	1	
이천시	22	5	17	0	
안성시	18	6	12	0	
김포시	17	11	6	0	
화성시	14	7	7	0	
광주시	26	20	6	0	
여주시	12	4	8	0	
양평군	14	3	10	1	
북 부	136	89	47	0	
고양시	35	29	6	0	
의정부	11	8	3	0	
남양주	26	20	6	0	
파주시	21	11	10	0	
구리시	11	7	4	0	
포천시	12	2	10	0	
양주시	13	10	3	0	
동두천	1	0	1	0	
가평군	3	0	3	0	
연천군	3	2	1	0	

※ 과천시 미운영

1-6 공공형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도비

보육정책팀 ☎8008-2598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우수한 보육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사업량 : 영유아 21,180명
- 지원내용 : 아동 현원 기준 1인당 월 3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7,969백만원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사군 차등보조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3,073,168	7,580,840	7,523,580	7,968,748
도 비	6,499,066	2,116,800	2,171,074	2,211,192
시군비	16,574,102	5,464,040	5,352,506	5,757,556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급기준
 - 전월 말일 재원아동(현원) 기준으로 지원(방과 후 아동은 제외)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 해당 월 미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및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원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기준 준수

1-7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정책팀 ☎8008-259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인건비(조리원)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7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량 : 650개소

○ 총사업비 : 6,763백만원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 차등보조

○ 지원기준 :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조리원 채용기준에 의거)

지원기준	40인 미만	40인 이상	비 고
월지원액(개소당)	70만원	100만원	보육현원 기준

※ 조리원인건비 10만원 인상('22년 60만원~90만원 ⇨ '23년 70만원~100만원)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7,716,539	5,440,232	5,513,593	6,762,714
도 비	4,768,602	1,490,832	1,520,576	1,757,194
시군비	12,947,937	3,949,400	3,993,017	5,005,520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지원요건

-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교직원 전원 4대 보험 납부 완료, 퇴직급여제도 설정·운영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교직원(조리원) 배치기준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군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규모 변동 시 변동일자가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해당 규모의 월 지원액 지급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동 보조금은 모두 회수하고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현원 40인 이상시 100만원 지급) ⇒ 단, 현원감소 시 2개월 유예기간 적용 (* 21년도 신설조항)

○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신규인증,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지원기준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 시정 등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및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포기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 환수
 - ※ 보조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운영 기준 준수

- ◆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대상 직무역량 강화 및 공공성 마인드 함양으로 보육품질 제고
- ◆ 영아기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23. 6월 ~ 8월 중(예정)
- 교육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22년 신규·전환) 130명
0세아전용어린이집 보육교사 70명
- 수탁기관 :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사 업 비 : 30,000천원 (도비 1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교육운영 : 총 5회 / 200명 / 집합교육(남·북부 구분)
 - 국공립 신임원장 : 3회(6~7월 중), 4일 과정, 총 23시간(강의)
 - 0세아전용 보육교사 : 2회(7~8월 중), 2일 과정, 총 12시간(강의+토론+워크숍)
- * 기수별 세부 일정은 추후 확정
- 교육내용 : 5대 핵심가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자 모집시 역량강화 교육 이수 의무 부여 예정

□ 교육핵심가치

- (공공성)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공적서비스로서의 보육사업 이해
- (투명성) 어린이집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 (전문성) 운영자의 리더십과 영유아지도를 위한 보육 전문성 강화
- (안전성) 도와주고 함께 해결하는 예방위주의 보육안전성 확보
- (개방성) 물리적 환경 구성과 부모참여를 통한 보육개방성 확대

참 고

교육과정별 세부일정(안)

[국공립어린이집 신임원장 역량강화 교육]

구 분	1일차(6시간)	2일차(6시간)	3일차(5시간)	4일차(6시간)
	공공성, 개방성	투명성	전문성	안전성, 투명성
10:00~11:00	보육공공성 및 정책 이해	어린이집 재무회계관리1	원장 리더십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친환경급식관리
11:00~12:00				
13:00~14:00	경기도 공보육 추진과 보육사업 이해	어린이집 재무회계관리2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운영과 지원	영유아 인권친화교육
14:00~15:00				
15:00~16:00	부모 소통, 지역사회협력	노무관리		어린이집 운영평가
16:00~17:00				

[0세아전용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

구분	영역	진행	시 간	교육과목	세 부 내 용
1일차	안전성	워크숍	10:00~12:00	i - 세상	- 건강 탄탄 튼튼 쑥쑥 - 안전 쑥쑥 위험 싹싹
	공공성	강의/ 토론	13:00~16:00	공공e더함	- 영아 교육 및 보육의 가치와 공공성 - 영아의 경험과 사회성 - 국내외 영아교육 및 보육사례
	투명성	강의	16:00~17:00	보육e든든	- 보육교직원 권리증진(심리, 노무, 법률)
2일차	개방성	워크숍	10:00~13:00	보육e3화음	- 이음_존중으로 나와 세상을 잇다. - 품음_소통으로 협력을 품다. - 펼침_긍정의 힘으로 미래를 펼치다.
	전문성	워크숍	14:00~17:00	i - 놀이	- 놀이 들여다 보기 - 놀이 의미 찾기 - 놀이 지원하기

1-9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4715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 부응하여 출산율 제고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로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08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축소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업량 : 335개소
- 지원내용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월 2,099,100원 / 인
 - 추가반 운영비 : 월 700,000원 / 반
 -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월 467,000원 / 인
 - 조리원 인건비 : 월 700,000원 / 인
- 사업비 : 33,37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35	33,370,263	-	9,042,260	24,328,003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87,838,695	25,609,464	28,858,968	33,370,263
도비	23,902,503	6,914,362	7,945,881	9,042,260
시군비	63,936,192	18,695,102	20,913,087	24,328,003

□ 사업 추진 안내

가. 선정기준 및 절차

-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가정어린이집(정부 인건비 미지원)
 - ※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통합형) 중복 불가
- 참여 기본요건
 -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이 A등급
 -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A등급
 -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농어촌 60% 이상)
 -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각각 80% 이상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제외대상
 - 공고일이 속한 월 전월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진행, 예정) 어린이집(원장)
 - ※ 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처분 이행 완료한 경우는 제외
 - 원장이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운영자가 다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세부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총 합계 점수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선정

구 분	세부항목(배점)	
우수성·전문성 (55)	맞춤형 보육지원 (25)	보육교직원 전문성 (30)
인프라·특성화 (45)	운영기간·정원충족 (30)	기타 심사기준 (15)

※ [붙임 1] 세부 선정기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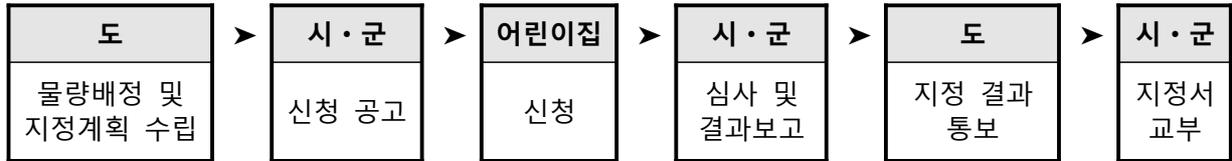
- 신규지정 시 공고일 기준 신규신청 해당 읍면동의 주민등록* 통계의 0~1세 아동 수에 따라 지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구 분	300명 미만	300명이상	700명 이상	1,000명 이상
지정 가능 개소 수 (기 지정 포함)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추가지정 불가
-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 순위
 - 1순위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미설치된 행정동 소재 어린이집
 - 2순위 : 정원 대비 보육실 면적이 넓은 어린이집
 - 3순위 : 0세아 보육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선정 및 지정절차



※ 운영 현황에 따라 연 2~3회 신규 지정

나.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 운영기준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B등급 이상
- 입소기준 : 입소월 기준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
 -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신규 지정 시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반편성기준 : 0세반(1:2), 1세반(1:3), 야간연장반 0세아 포함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 1세) 1개반 구성 가능
 - 1세반이 7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2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야간연장반은 다른 어린이집 0세반, 1세반 영아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 0세반, 1세반 영아의 형제자매도 이용 가능
 - ※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사후관리

- 홍보 : 도, 시·군을 통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지원
- 표창 : 우수 보육교직원 및 시·군 공무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 교육 및 컨설팅 : 우수 어린이집 원장 컨설팅 및 원장 자율모임 공유

- 모니터링 : 신규 및 기존 어린이집 대상 연1회 실시
 - 제외대상, 운영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등 보육품질관리 확인

다.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단가	세 부 사 항
추 가 반 보육교사 인 건 비	2,099,100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불가)의 기본급 보조 ※ 사회보험 본인부담분 포함
추 가 반 운 영 비	700,000천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퇴직적립금 • 추가반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원장제외)의 제수당, 사회보험 사용자부담분, 복리후생비 ※ 추가반 보육교사 배치에 따른 비용 우선사용 원칙
야간연장 추 가 반 근무수당	467,0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연장반 0세아 포함 총4명 이상시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에 따라 추가된 기본 보육교사 (교사겸직원장 포함), 야간연장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의 초과근무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수당 ※ 보건복지부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동일 기준 ※ 야간연장보육 미지정의 경우도 추가반에 한하여 지원 (전산상 추가반 미생성 → 시군확인 후 추가반 지급)
조 리 원 인 건 비	700,0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채용 조리원 기본급 보조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기준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단, 조리원의 경우,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월30일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기준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 받고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하여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월부터 지원
- 단,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다음 해 2월 28일까지(신학기 이전) 퇴소 완료
 - ※ 예) 신규지정 당시 0세 5명, 1세 8명, 2세 7명 재원 중일 경우 0세반 3개반, 1세반 3개반이 구성된 월부터 지원, 2세반 아동은 신규지정된 익년 2월28일까지 퇴소 완료
 - ※ 신규지정된 익년 2월28일까지 2세반 이상 아동 퇴소 미완료시 3월부터 퇴소 완료까지 지원 중단
 - ※ 신규, 임용, 면직의 경우 인건비·운영비는 일할지급 (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1세·2세 혼합반 구성 시 해당 월부터 1세 추가반 지원중단, 1세반만으로 구성된 월부터 지원 재개
-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 아동 퇴소 등으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익월까지 재직 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야간연장 이용아동이 0세아 포함 총 4명 이상일 때 반드시 교사 대 영아 비율 조정(1.5→1:3) 운영(0세아가 없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재지원하며,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의 경우 익월 및 익익월까지 소급지원 가능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라. 지정취소 및 운영포기

○ 지정취소 : 시장·군수

-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평가인증 취소사유 외)을 받은 경우
 - ※ 지정취소 세부기준(최근 3년간)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 (해당 어린이집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 또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동일 행정동 외 이전시 인가변동사항 시·군 확인 후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는 유지가능 단, 평가 후 A등급일 경우에만 지정 유지

* 평가주기 조정에 따른 평가소요 기간 (6개월~1년 내외)

• 평가인증 취소시 또는 평가제 C등급 이하 (2023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 집 평가 참고)

※ 평가인증기간 만료시 평가소요기간 (6개월~1년 내외)까지 유지가능 단, 평가 후 B등급일 경우에만 지정 유지

• 시·군 모니터링 결과 최근 6개월 평균 정원충족율 50% 미만시

• 지원조건 미충족 및 아동 감소 등으로 3월 연속으로 지원 중단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

- 지정취소 확정 후 도에 결과 보고 및 지정서 회수폐기하고 시스템 정비

-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신청 제한

※ 대표자 변경 및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취소 시 적용제외

- 취소일이 속하는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월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기준 준수

※ 법령위반,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평가 결과 A, B,등급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운영포기

-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도 희망에 의하여 운영포기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시·군에 제출하고 이후 지정취소와 동일 적용

[붙임 1]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표

기준	세부기준	내용	점수	배점 기준 (증빙)	비고		
맞춤형 보육지원 (25)	맞벌이 자녀 재원율(현원기준) * 입소우선순위 취업기준 (15점)	. 80% 이상~	15		○ 별도 증빙자료 첨부		
		. 70% 이상~80% 미만	13				
		. 60% 이상~70% 미만	11				
		. 50% 이상~60% 미만	9				
		. 50% 미만	7				
	야간연장보육 지정 (10점)	. 지정	10				
. 미지정		5					
보육교직원 전문성 (30)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총 근무경력 (10점)	. 10년 이상	10				
		. 5년 이상~10년 미만	8				
		. 3년 이상~5년 미만	6				
		. 3년 미만	4				
	1급 보육교사 비율(원장제외) * 담임교사 (10점)	. 70% 이상	10				
		. 60% 이상~70% 미만	8				
		. 50% 이상~60% 미만	6				
		. 50% 미만	4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 담임교사 비율(원장 포함) (10점)	. 80% 이상	10				
		. 70% 이상~80% 미만	8				
		. 60% 이상~70% 미만	6				
		. 50% 이상~60% 미만	4				
	. 50% 미만	2					
	현 어린이집 운영기간 * 최초인가일 기준 (15점)	. 7년 이상			15		
		. 5년 이상~7년 미만			12		
		. 3년 이상~5년 미만			9		
. 3년 미만		6					
운영기간 및 정원충족률 (30점)	정원충족률 * 공고일 전 6개월 평균 (15점)	. 80% 이상~	15				
		. 75% 이상~80% 미만	12				
		. 70% 이상~75% 미만	9				
		. 70% 미만	6				
기타 (15점)	경기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한 CIS 회계보고 건수 (10점)	. 12건 이상	10		○ 21년 운영 개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보고건수 × 12 / 운영월		
		. 9건 이상	7				
		. 6건 이상	4				
	열린어린이집 지정 (5점)	. 지정	5				
		. 미지정	3				
	합계			100			

[붙임 2]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0세반> <혼합반 : 0세아, 1세아 각 1명시 또는 0세아만 1명 있을시>

아동수	기존 1:3 보육 반 수 (a)	전용 1:2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3명	1	2	1	
4명	2	2	1	
5명	2	3	1	
6명	2	3	1	
7명	3	4	1	
8명	3	4	1	
9명	3	5	2	
10명	4	5	2	
11명	4	6	2	
12명	4	6	2	
13명	5	7	2	
14명	5	7	2	
15명	5	8	3	
16명	6	8	3	
17명	6	9	3	
18명	6	9	3	
19명	7	10	4	
20명	7	10	4	

<1세반> <혼합반 : 1세아만 1명 있을시> <야간연장반 : 0세아 1명 이상시>

아동수	기존 1:5 보육 반 수 (a)	전용 1:3 보육 반 수 (b)	추가반 (b-a)	비 고
4명	1	2	1	
5명	1	2	1	
6명	2	2	1	야간연장 추가반의 경우 국비 2명 지원시 미지원
7명	2	2	1	1개반 1:4 허용
8명	2	3	1	
9명	2	3	1	
10명	2	3	1	1개반 1:4 허용

- 예1)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7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예2)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10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예3) 야간연장반 보육아동이 0세아를 포함하여 0, 1세 형제자매 총 10명인 경우(4명 이상) 반편성 조정(1:5→1:3) 운영하여 1개의 야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을 지원함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투명한 사용과 올바른 회계운업을 위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전문 컨설팅 지원 및 교육운영으로 회계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 2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 **사업개요**

- 교육일정 : 12회 /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 교육대상 : 사용자(어린이집),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관리자(담당공무원)
- 수행기관 : 도 직접 운영
- 사업비 : 30,000천원 (도비 100%, 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및 맞춤형 교육

□ **사업 추진 안내**

- (도 주관, 재무회계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 투명한 시스템 사용과 올바른 회계운영 지원을 위한 재무회계 전문인력 양성

구 분	기능개선 교육	보육 컨설턴트 교육	관리자 교육	보육코디 교육
교육횟수	4회	4회	2회 (상·하반기 1회씩)	2회 (상·하반기 1회씩)
교육대상	사용자 2회 관리자 2회	보육컨설턴트	시·군 보육담당 공무원	보육코디네이터
교육과정	1과정 (시스템)	2과정 (시스템, 재무회계)	2과정 (시스템, 재무회계)	1과정 (시스템)
교육시간	2시간	5시간	5시간	2시간

- (개발사 주관,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 및 안정성 강화)
 - 시스템 사용자 급증에 따른 맞춤형 전산교육 확대 및 헬프데스크 운영 강화

▶ 교육일정 : 매주 1회(목요일) / 회당 2시간
▶ 교육내용 : 자료입력 및 서식출력 방법, 자료 활용 방법 등 시스템 교육 기초교육

- 보안 취약점 점검·관리 및 성능 향상 등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제고

□ 구성 및 내용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주소 : <http://www.accgg.co.kr> >



□ 사용 장점

- 모바일 전용 앱(APP) 지원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는 회계처리 가능
- 계좌 자동연계(핀뱅킹) 구축을 통한 실시간 거래내역 제공
- 어린이집 종이서류(24종)의 전자화로 회계처리의 편리성, 효율성 및 경제성 증대
- 별도 출력물 없이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등의 전자문서 관리·보존(비치) 가능
- 회계검증기능 구현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회계보고 전 오류여부 자가 검증 가능
- 시스템 사용료 무료 및 거래실적(통장·카드)에 따른 적립금 지급
- 사용자 맞춤형 전산교육 및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 지원(보육컨설턴트)
- 전화, 온라인 질의상담 운영 강화로 시스템 사용 불편사항 즉각 해소
- 전문 상담인력 보강(2명 → 7명) 등 헬프데스크(☎1644-6840) 운영 강화
-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3초 → 0.5초) 및 회계검증기능(사전 오류 확인) 제공
- 보안 취약점 점검·관리 및 성능 향상 등을 통한 시스템의 고도화·안정화

- 지역여건을 감안한 아이사랑 놀이터 확대 설치로 수요자 중심 육아 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2.
- 사업량 : 2~3개소
- 선정기준 :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설치비 미지원 지역 우선 지원

시군 수요조사 및 선정(道) → 예산지원(道-시군) → 대상지 설치(시군) → 사업결과 보고(시군-道)

- 소요예산 : 90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지자체 유휴시설 등 공용공간을 활용한 실내놀이터 조성(250㎡이상) 및 영유아·부모 이용 지원
 - * 실내놀이터 이용, 놀이지도 및 육아상담 서비스 등 실시
 - 지원내용(안) : 160만원/㎡, 개소당 최대 4.5억원

□ **추진성과**

- ('22년 실적) 1개소(동두천) 300백만원 지원
- 설치현황('22.12월기준) : 31개 시·군, 89개소(유사시설포함 118개소)
-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아이사랑놀이터 기능 강화

참고

아이사랑놀이터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비고
		합계	도비지원	자체설치		
총계	118	89	50	39	29	
도직접	1	1	1			
남 부	85	66	38	28	19	
수원시	9	9	4	5		
성남시	15	13	5	8	2	
용인시	4	2		2	2	
부천시	6	5	5		1	
안산시	2	2	2			
안양시	3	1	1		2	
화성시	7	7	2	5		
평택시	4	4	2	2		
시흥시	3	3	2	1		
광명시	3				3	
김포시	1	1		1		
군포시	3	2	2		1	
광주시	1				1	
이천시	2	2	1	1		
오산시	8	6	5	1	2	
안성시	1	1	1			
의왕시	5	1	1		4	
하남시	2	1		1	1	
여주시	2	2	1	1		
양평군	2	2	2			
과천시	2	2	2			
북 부	32	22	11	11	10	
고양시	9	9	1	8		
남양주	9	3	1	2	6	
의정부	2	2	2			
파주시	3	1	1		2	
양주시	1	1	1			
구리시	2	2	1	1		
포천시	3	2	2		1	
동두천	1	1	1			설치중
가평군	1	1	1			
연천군	1				1	

2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2-1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국·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2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모니터링하여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도모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

[우선 선정대상]

-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 결과 '3영역(건강·안전) 개선필요' 어린이집
-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 언론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

- 모니터링 지표 : 4개 영역 15개 지표(건강 3, 안전 4, 급식 4, 위생 4)

1. 건강관리(3)
1. 감염병 예방·관리 2. 비상약품 관리 3.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지원

2. 안전관리(4)
1. 실내외 시설 관리 2. 등·하원 인계과정 3. 차량 안전관리 4. 아동권리존중 실천 및 안내

3. 급식관리(4)
1. 식단 및 영양, 보존식 관리 2. 식품 알레르기 관리 3. 조리과정 위생 및 조리직원 복장 위생 4. 식자재 보관규정

4. 위생관리(4)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2. 급·배식과정 및 식수(우유) 등 위생 관리 3. 실내 공간(놀잇감) 청결 및 공기질 등 관리 4. 개별침구, 칫솔 등 청결 관리

- 모니터링단 구성 : (부모)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중에서 구성 (전문가 단위) 보육·보건전문가 시군 위촉

- 활동방법 : 재원아 부모(1인 이상)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실시, 시·군은 전문가 단위를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예산 및 우선실시 기준 고려)

* 컨설팅 제공 : 방문일정 사전협의, 급간식시간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지표별 항목 미흡사항 등 컨설팅

- 결과활용 : 모니터링 결과 시군 제출, 해당어린이집 부모 및 운영위원회 공지, 아동학대 등 법 위반 의심시 즉시 시·군 통보 등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641,967	491,313	627,006	523,648
국비	832,400	248,400	318,000	266,000
도비	411,000	122,828	157,252	130,920
시군비	398,567	120,085	151,754	126,728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행정사항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3월)
-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3월~12월)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 연 2회 (상·하반기)

□ 참고사항

구분	기 존 (2022년)	개 정 (2023년)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모니터링 - (부모단원)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 (전문가 단원) 보육 또는 보건전문가 · 자체모니터링 재원 영유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모니터링(통합) - (부모)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부모 * 어린이집 재원아 부모 중에서 구성 - (전문가 단원) 보육 또는 보건전문가 위촉
대상	관내어린이집(50%), 열린어린이집 제외	모든 어린이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모니터링 - 부모모니터링단원(부모, 전문가, 1:1)이 어린이집 방문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자체모니터링 - 재원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직원(원장)이 참여하여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모니터링(통합) 재원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이 모니터링 실시+전문가 단원 파견(컨설팅 제공)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모니터링 15항목 · 자체모니터링 10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모니터링(통합) 건강·안전·급식·위생 관련 15항목
실시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모니터링 - 관내 어린이집 50% 선정, 2년 1회 내외 실시 · 자체모니터링 - 매년 1회 이상 * 최소 1회는 부모모니터링단 점검 이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모니터링(통합) - 모든 어린이집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 전문가 단원 참여 모니터링은 연 1회 실시 (예산 및 우선 실시 기준 고려)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3,082개소 * 전체 9,438개소의 32.7%

구분	계	가정	국공립	민간	직장	법인단체등	사회복지법인	협동
열린	3,082	1,253	1,014	698	74	23	14	6
전체	9,438	4,575	1,326	3,022	300	95	56	64

○ 지정기간 : '22.11.1. ~ '23.10.31.(1년)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선정요건 : 4개 항목 100점 중 80점 이상

- ① 개방성(35점)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창) 부모 공용공간, 온라인 소통창구 등
- ② 참여성(35점) :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만족도 조사 등
- ③ 다양성(15점) : 인근 어린이집간의 연계, 부모참여활동의 지역사회와 연계 및 협력
- ④ 시군 자체 선정기준 (15점)

* 열린어린이집 신규선정(재선정) 시 총점 80점 이상 및 동일 점수일 경우 영역별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순으로 점수가 상위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국공립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보조교사: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등
- 각종 실태·점검·조사에서 제외(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같음)
 -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가능
 - * 열린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삭제 ('23.1.1개정)

□ 행정사항

- '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보고 (3~4월)
- 열린어린이집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 (6~7월)
- '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확정(11월)

참고

시군별 열린어린이집 선정현황

(단위 : 개소, %)

시군	전체 어린이집	유 형								비고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9,438	3,082	1,014	14	23	698	1,253	6	74	
수원시	811	177	37	0	0	38	100	0	2	
용인시	713	90	35	0	0	26	25	0	4	
성남시	515	151	44	2	0	22	79	1	3	
화성시	772	160	72	0	0	40	46	0	2	
부천시	481	211	48	1	6	30	119	1	6	
안산시	399	130	41	0	2	54	28	0	5	
평택시	398	152	52	0	2	36	61	0	1	
안양시	352	123	26	0	0	20	77	0	0	
시흥시	460	145	73	2	2	19	45	0	4	
김포시	409	118	45	0	0	32	40	0	1	
광주시	294	209	29	3	0	86	91	0	0	
광명시	199	70	29	0	0	11	28	1	1	
하남시	240	85	51	0	0	20	12	0	2	
군포시	189	69	24	1	0	8	34	2	0	
오산시	215	95	38	0	1	13	42	0	1	
이천시	144	44	16	0	0	20	4	0	4	
안성시	147	68	14	0	1	25	28	0	0	
의왕시	116	48	20	0	2	8	18	0	0	
양평군	45	32	11	1	1	16	3	0	0	
여주시	60	32	7	2	0	14	8	0	1	
과천시	51	18	13	0	0	1	3	0	1	
고양시	626	175	73	0	1	15	79	0	7	
남양주시	532	194	72	0	4	25	91	0	2	
파주시	373	130	32	0	0	36	53	0	9	
의정부시	336	85	32	0	1	18	31	0	3	
양주시	210	86	25	0	0	15	39	0	7	
구리시	128	72	15	0	0	14	43	0	0	
포천시	90	57	19	0	0	22	14	1	1	
동두천시	74	23	8	1	0	7	7	0	0	
가평군	34	14	6	0	0	5	0	0	3	
연천군	25	19	7	1	0	2	5	0	4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를 통해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모든 어린이집 9,438개소('22년 12월말)
- 사업내용
 - (현원 100인 이상) 영양사 1인 전담 관리
 - ※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인접 시군의 2개 이내 공동관리 가능
 - (현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 집단급식소 신고·운영, 조리사 배치
 - (보존식 보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6일) 이상 보관
 - ※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음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현장학습 등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 및 동의

□ 향후계획

- 현원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배치·관리
- 현원 100인 미만 시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관리
- 동·하절기 급식·위생 전수점검 실시(7월, 11월)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식중독 등 급식관련 사고,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사고관리 > 식중독 / 급식 사고 등록

경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 (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식약처(도 식품안전과)
- (설치) 31개소
- (기능) 센터 등록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2-4 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도비

보육기반팀 ☎8008-2543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안전용품 장비 등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인건비 지원 시설)
- 사업량 : 79개소(증개축 1, 개보수 37, 장비 41)
 - ※ 수원, 부천 등 2개 시군 사업대상 없음
- 사업비 : 1,099,732천원(국 555,866, 도 274,933 시군 268,933)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사업내용

구분	단가	지원대상
증개축	최대 184,404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개보수	최대 30,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장애아 개보수	최대 30,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중 장애아 전문
장비비	최대 2,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내용 연수 5년 이상, 단가 5만원 이상 물품
장애아 장비비	20인미만 : 최대 3,000천원 20인이상 : 최대 4,000천원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중 장애아 전문 및 통합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824,807	2,540,971	1,184,104	1,099,732
국비	2,439,318	1,289,400	594,052	555,866
도비	1,206,197	635,238	296,026	274,933
시군비	1,179,292	616,333	294,026	268,933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행정사항

- 사업대상 및 내용 등 변경사항은 수시 신청·승인(시군 → 도)

참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 계획

시군	사업량(개소)				소요예산 (천원)
	계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계	79	1	37	41	1,099,732
용인시	5		2	3	65,000
고양시	3		2	1	52,600
성남시	4		2	2	62,000
화성시	5		2	3	56,680
남양주시	4		2	2	62,000
안산시	2		2		41,560
평택시	1		1		30,000
안양시	3		2	1	51,560
시흥시	1			1	2,000
김포시	3		2	1	60,040
파주시	2		1	1	31,000
의정부시	3		1	2	33,000
광주시	3		1	2	34,000
광명시	1		1		29,000
하남시	4		2	2	42,500
군포시	1		1		19,000
오산시	2		1	1	31,000
양주시	3		1	2	35,800
이천시	4		1	3	37,800
구리시	3		1	2	8,800
안성시	4		1	3	29,800
의왕시	2		1	1	20,000
포천시	4		1	3	37,800
양평군	3		1	2	33,000
여주시	1		1		29,000
동두천시	3	1	1	1	73,792
과천시	3		1	2	32,000
가평군	1		1		30,000
연천군	1		1		29,000

노후화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안)**

- 사업대상 :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 사업량 : 200~250개소
-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180/시·군비 420)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사유재산임을 감안하여 50% 자부담)
 - 지원액 : 정원 20인이상 최대 3백만원, 20인미만 최대 2백만원
 - ※ 총사업비 = 지원액 + 어린이집 자부담(총 사업비의 50%)
 - (정원 20인이상 최대 6백만원, 20인 미만 4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업 수행 가능)
- 사업내용

유형	분야	세부 내역
개보수	석면건축물	• 석면함유 건축자재 제거, 보수 등
	온실가스 저감	•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등
	위생·안전·친환경시설	• 비상재해대피시설, 방염설비 • 화장실, 급식시설 개선 등
장비비	노후시설	• 놀이터 설치·개보수 • 보육공간 재배치, 안전성 및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공사 등
	안전용품	• 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위생용품	• 자외선 살균소독기 등

※ 기타 어린이집 노후화 및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비 지원 가능

□ **연도별 예산내역** : 23년 신규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00,000	0	0	600,000
도비	180,000	-	-	180,000
시군비	420,000	-	-	420,000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
※ 「영유아보육법」 개정('18.12.11.)으로 '19. 6. 12.부터 의무평가제 시행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제외)
- 평가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과정 : 3단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평가등급 : 4등급 (A, B, C, D)
- 평가주기 : (A·B등급) 3년, (C·D등급) 2년

□ **연도별 추진실적**

- 평가(인증) 현황

(22.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

연도별	구 분	전체 어린이집수 (A)	평가 (인증) 율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B)	평가인증률(%) (B/A)×100	평가어린이집수 ** (C)	평가율(%) (C/A)×100
2020년	경기도	10,761	82.8	7,206	67.0	1,702	15.8
	전 국	35,352	87.0	23,909	67.6	6,844	19.4
2021년	경기도	10,136	89.3	6,265	61.8	2,783	27.5
	전 국	33,246	92.3	18,618	56.0	12,069	36.3
2022년	경기도	9,438	94.9	3,109	32.9	5,843	61.9
	전 국	30,923	95.3	9,897	32.0	19,571	63.3

*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연도별 12월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평가 어린이집 수 : '19. 6월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집

- 평가결과 확정 현황

(22.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도별	구 분	평가결과확정 어린이집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021년	경기도	2,783	1,865	672	185	61
	전 국	12,069	7,616	3,340	788	325
2022년	경기도	5,843	3,983	1,502	246	112
	전 국	19,571	13,230	5,222	767	352

참고

시·군별 평가(인증)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 단위 : 개소, %)

구 분	전체 어린이집수 (A)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수*(B)	평가인증율 (B/A) × 100	평가 어린이집수**(C)	평가율 (C/A) × 100
경 기 도	9,438	3,109	32.9	5,843	61.9
수 원 시	811	312	38.5	464	57.2
성 남 시	515	134	26.0	357	69.3
고 양 시	626	200	31.9	392	62.6
부 천 시	481	177	36.8	292	60.7
안 양 시	352	143	40.6	196	55.7
안 산 시	399	130	32.6	255	63.9
용 인 시	713	252	35.3	437	61.3
의정부시	336	93	27.7	213	63.4
남양주시	532	164	30.8	334	62.8
평택시	398	84	21.1	285	71.6
광명시	199	76	38.2	117	58.8
시흥시	460	153	33.3	278	60.4
군포시	189	80	42.3	104	55.0
화성시	772	245	31.7	476	61.7
파주시	373	115	30.9	237	63.7
이천시	144	55	38.2	81	56.3
구리시	128	51	39.8	69	53.9
김포시	409	131	32.0	264	64.5
포천시	90	30	33.3	55	61.1
광주시	294	94	32.0	185	62.9
안성시	147	52	35.4	84	57.1
하남시	240	66	27.5	151	62.9
의왕시	116	32	27.6	83	71.6
양주시	210	58	27.6	134	63.8
오산시	215	80	37.2	132	61.4
여주시	60	21	35.0	32	53.3
양평군	45	18	40.0	27	60.0
동두천시	74	26	35.1	44	59.5
과천시	51	12	23.5	32	62.7
가평군	34	16	47.1	17	50.0
연천군	25	9	36.0	16	64.0

* 평가인증 어린이집수 : '22. 12월말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평가 어린이집 수 : '19. 6월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가 확정된 어린이 수

어린이집 재무회계, 道 시스템, 평가제 컨설팅 맞춤형 교육운영을 통한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강화 및 보육품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 사업비 : 2,230,644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주관 : 도,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운영인력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36명
 - 도 : 2명(경기·경기북부 육아종) * 道 자체 사업비로 운영
 - 시·군 : 34명(30개 시·군, 31개 육아종)
 - *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미배치 시군 : 동두천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道 시스템 컨설팅 운영 및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운영 및 평가지표 교육 추진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298,428	1,955,520	2,112,264	2,230,644
도비	3,149,214	977,760	1,056,132	1,115,322
시군비	3,149,214	977,760	1,056,132	1,115,322

□ 사업추진 안내

[운영체제]

도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 사업 성과관리 및 홍보 등 ▶보육컨설팅 품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컨설턴트 및 관리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 - 보육코디네이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 세부실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예산변경 승인 및 사업비 정산 - 어린이집과의 컨설팅 연계 및 사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경기·경기북부) 육아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컨설턴트O.T, 교육, 간담회 사례집 발간 등 - 시·군 컨설팅 모니터링 - 컨설턴트 미배치 시·군 지원 ▶시·군 육아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 보육컨설턴트 채용 관리 -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재무회계, 시스템, 평가)

[운영기준]

○ 컨설턴트 채용기준

- (무기계약)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신규채용 시 무기계약직 채용원칙
 - ※ 다만, 인력운영은 육종센터장 권한사항으로 계약직(24개월 이내) 채용 후 자체 평가를 통한 무기계약 전환을 검토하여 채용할 수 있음
- (급여기준) 무기계약직 봉급표 ‘1~10호봉’ (일반직공무원 8급 기준적용)
 - ※ 시·군별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내(1~10호봉)”에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신규 채용 시에는 6호봉 이하로 적용함

○ 사업비 집행기준

- (인건비) 기본급, 수당,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비상근인력운영비
 - ※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목별 조정 집행할 수 있음(단,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외)
 -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액 2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운영비) 여비, 교재·홍보물,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 멘토링 등
 - ※ 운영비를 ‘자산물품취득비 및 시설개선비’로 사용 불가
 - 다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에 따라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구입은 가능하며, 50만원 이상의 물품 필요 시 ‘임차’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함
 -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음.

[세부추진내용]

- 재무회계 컨설팅 60% 이상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투명성 강화
 - (홍보)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재무회계 컨설팅의 거부감 인식 개선을 통한 컨설팅 수요 발굴을 위한 관내 어린이집 대상 적극적인 홍보
 - (컨설팅 참여 권고) 「사군 주관」 사군별 신규 개원 및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컨설팅 참여 권고를 통한 의도적인 컨설팅 참여 제도 마련

- 사전·사후 평가제 컨설팅을 통한 어린이집의 안심보육 환경 조성
 - (상위등급을 제고) 의무평가제 도입에 따른 '23년 최초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우선 지원으로 상위등급 평가율 제고
 - (사전) 평가절차, 방법,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 (사후) 하위등급(C, D) 어린이집 지역지원가 참여 사후방문 컨설팅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 (집합교육) 「道 주관」 재무회계 및 시스템 관련 년 2회(상·하반기) 추진
 - (멘 토 링) 「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신규 컨설턴트 대상 필요한 경우 재무회계·시스템 분야 멘토링 자체 추진 (컨설턴트 사업비 내 운영비 활용)
 - (간 답 회) 「道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분야별 소그룹 스터디 등 추진
 - (모니터링) 「道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권역별 컨설턴트 추진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등

참고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운영현황

<< 도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33개소, 36명 >>

연번	육종센터명	임용일	임용구분	호봉	비 고
1	경 기 도	2020-06-08	계 약 직	8	道 민간위탁금 운영
2	수 원 시	2020-02-01	계 약 직	9	
3	수 원 동 부	2018-02-20	무기계약직	10	
4	용 인 시	2021-01-01	계 약 직	7	컨설턴트 2명 배치
		2022-01-01	계 약 직	6	
5	성 남 시	2022-01-01	계 약 직	3	
6	부 천 시	2018-01-01	무기계약직	10	
7	화 성 시	2017-02-13	무기계약직	10	컨설턴트 2명 배치
		2020-07-29	계 약 직	8	
8	안 산 시	2022-10-01	계 약 직	6	
9	안 양 시	2019-08-01	무기계약직	10	
10	평 택 시	2022-01-01	계 약 직	7	
11	시 흥 시	2022-02-01	계 약 직	8	
12	김 포 시	2021-05-27	무기계약직	8	
13	광 주 시	2022-01-01	계 약 직	10	
14	광 명 시	2021-02-22	계 약 직	7	
15	군 포 시	2020-11-01	무기계약직	10	
16	하 남 시	2022-08-01	계 약 직	7	
17	오 산 시	2017-02-01	무기계약직	10	
18	이 천 시	2022-06-01	계 약 직	3	
19	안 성 시	2021-03-01	계 약 직	7	
20	의 왕 시	2022-01-01	계 약 직	6	
21	양 평 군	2022-01-01	계 약 직	6	
22	여 주 시	2020-03-16	계 약 직	9	
23	과 천 시	2020-02-17	무기계약직	10	
24	경 기 북 부	2020-09-15	계 약 직	8	道 민간위탁금 운영
25	고 양 시	2022-01-01	계 약 직	6	컨설턴트 2명 배치
		2022-01-01	계 약 직	6	
26	남 양 주 시	2019-01-01	무기계약직	10	
27	파 주 시	2019-07-29	무기계약직	10	
28	의 정 부 시	2020-05-01	무기계약직	9	
29	양 주 시	2019-01-01	무기계약직	8	
30	구 리 시	2022-03-01	계 약 직	6	
31	포 천 시	2018-01-01	무기계약직	10	
32	가 평 군	2022-08-22	계 약 직	2	
33	연 천 군	채 용 예 정			'23. 3월 개소(예정)
-	동 두 천 시	경기북부센터에서 운영			'23.10월 개소(예정)

어린이집 현지 지도점검과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 병행 추진으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등이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 지도점검 병행)

□ **추진계획**

- (점검주체) 31개 시군 ※ 필요시 보건복지부, 경기도, 시군 합동조사 추진
- (점검대상) 2년이상 미점검, 아동학대·부정사례 발생 어린이집 (시군선정)
 - 현 지 : 전체 어린이집의 70%
 - 온라인 : 정기조사 대상 중 민간·가정어린이집 10% 이상
 - ▶ 상반기 : 민간·가정어린이집 531개소 이상 [의무]
 - ▶ 하반기 : 국공립어린이집 928개소 이상 [권고]
- (유형별 점검)

점검유형	점검내용		점검방식
정기	도내 어린이집 전체	시·군 자체계획(시군)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온라인 지도점검 (재무회계 분야) *22년 신규 도입 (전국 최초)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현지 지도점검 (재무회계 외 6개분야) </div> </div>
수시	민원제보, 언론보도 어린이집	불시 조사(도, 시군)	
특별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이슈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선정)	합동 조사 (보건복지부·도·시군)	

□ **중점 점검사항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학차량 차량신고 여부,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보고,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
- 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영유아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cctv 열람 포함
- ⑩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여부

어린이집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연 혁

- 사업시행 : 2017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아반을 운영하는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사업량 : 9,305개소
- 지원액
 - 가정·협동어린이집 : 월 15만원
 - 그 외 어린이집 : 월 10만원
- 사업비 : 14,067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305	14,067,600	-	3,302,400	10,765,200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4,418,188	15,462,000	14,888,588	14,067,600
도비	10,485,859	3,625,740	3,557,719	3,302,400
시군비	33,932,329	11,836,260	11,330,869	10,765,2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방법 및 내용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 지급일로 함
 -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 및 렌탈비
 - ※ 렌탈비 예산지급액 범위내 월별 지급 가능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기밥솥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으로 영아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 제외
 - A4용지, 토너 등 소모품은 가능하나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어린이집 자산취득성 물품 제외(※ 월 지원액 범위 내 집행 원칙으로 할부 등으로도 구입 불가)
 - 영아반교사 대상 학습활동 지원
 -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사 학습, 연구 활동(서적구입 등), 교육, 전문가 자문 등 경비
 - 학습활동과 무관한 경비(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교통비 등) 제외
 - 정부 지원받는 교육은 제외
 - 아동안전과 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소화설비 등 재난대비 물품, 차량안전설비 등 보호장구, 기타 아동 안전을 위한 물품으로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의 구입 및 설치·유지비용
 - 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료는 가능하나 안전공제회,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가입에 따른 보험(공제)료 제외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전체 영아반의 현원이 1인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월중에 한명도 없게 된 경우에는 익월부터 미지원
 - 2~3세 혼합반일 경우 미지원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또는 평가제 A,B,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B,C등급) 어린이집
 - 매월 심의결과 발표시 신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이 공표된 날의 익월부터 지원대상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 부터 미지원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미지원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미지급
-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미지급

나. 지원요건(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 ② 총 정원, 교사 대 영아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 ③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어린이집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 제외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ex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경우 전액 환수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프로그램 지원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총원해야 함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어린이집에서는 교재교구 구입 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출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미 증빙 집행액 또는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액을 전액 환수

라. 지원 제외

- 지원연도 2년 이내에(2018년 1월 1일 이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등에 따른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조리원 별도채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 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사업시행 : 2017년 1월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부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 지원제외대상

-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평가인증 취소 또는 평가제 D등급 어린이집

○ 사업량 : 5,421명

○ 지원내용 : 월 400천원 / 1인 / 1개소

○ 사업비 : 26,02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421	26,021,880	-	5,836,428	20,185,452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72,670,680	24,562,800	22,086,000	26,021,880
도비	16,142,508	5,310,000	4,996,080	5,836,428
시군비	56,528,172	19,252,800	17,089,920	20,185,452

□ 사업 추진 안내

○ 사업대상 : 정부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 평가등급 공표일의 익월부터 지원

※ 지원제외대상

- 조리원 인건비 지원시설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 공공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등

*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 평가인증 취소 또는 평가제 D등급 어린이집

○ 조리원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조리원과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회보험에 가입 및 납부완료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 보조 * 사회보험적용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기준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원장의 사용자부담금 체납으로 지원제외 후 체납월 익월까지 납부완료시 소급지원

- 어린이집과 조리원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리원은 어린이집에서 조리, 급식 및 위생 관련업무 수행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지원단가× $\frac{\text{근무일수(토,공포함)}}{\text{해당월의일수}}$)

- 지원 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지급상한 :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 인증 유효기간 종료 또는 평가제 D등급 이하 등으로 지원조건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까지 지원

《평가인증 또는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적용기준》

- 인증(또는 평가제 A,B,C등급)이 유효한(인증유지 또는 평가제 A,B,C등급) 어린이집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 부터 미지원
 - 평가제D등급 공표일 익월부터 미지급
-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D등급으로 조정은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미지급

실내 활동이 증가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
- 사업량 : 9,529개소
 - 공기청정기 45,281대(개소별 평균 4~5대)
- 사업내용 :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공기청정기 1대 지원
- 지원단가 :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
 - 렌탈비 : 1대당 월 최대 11천원(연 132천원)
 - 유지관리비 : 1대당 연 최대 130천원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8,669,809	6,564,729	6,127,988	5,977,092
도비	5,600,942	1,969,418	1,838,396	1,793,128
시군비	13,068,867	4,595,311	4,289,592	4,183,964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17년부터 지원

□ **행정사항**

- (지원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육실(공동놀이실) 확인
 - ※ 예) 보육실 5실 등록 ⇒ 공기청정기 최대 5대 내에서 신청 가능
- (지원시기) 공기청정기 설치 익월부터 지원
 - 어린이집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 (지원중단) 공기청정기 설치기준 위반 및 허위 신청, 임의로 변경하여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전액 환수 조치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된 어린이집에 공기순환(정화)기 설치지원으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사업개요[안]**

- 사업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 사업량 : 60~75개소 (300~375대)
- 사업내용 :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공기순환(정화)기 설치지원
* 실당 1대 지원 / 공기순환(정화)장치 운영 관련 기타 필요비용은 어린이집 자부담
- 지원유형 : 창문형 공기순환(정화)장치
- 소요예산 : 750,000천원(도 225,000, 시군 525,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세부내역 : 공기순환(정화)기 2,000~2,500천원×어린이집 60~75개소×보육실 수(평균 5실)
-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5대 설치 시 10,000천원~12,500천원 소요

□ **행정사항**

- 공기순환(정화)기 설치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대상 선정
- (대상선정)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순
건축물의 준공일이 오래된 어린이집 순
정원 및 정원충족률이 높은 어린이집 순

※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순환(정화)기 설치 현황('22.11월 말 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총 개소수	연면적 430㎡ 이상	연면적 430㎡ 미만
1,316개소	358개소	958개소

- 국공립어린이집 공기순환(정화)국공립어린이집 현황

구분		연면적 430㎡ 이상			연면적 430㎡ 미만				
		합계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공기정화기	미설치	합계	공기순환기	공기순환+공기정화기	미설치
어린이집 개소수	1,316개소	358개소	160개소	98개소	100개소	958개소	391개소	174개소	393개소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을 운영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점검, 부모와 자녀의 역할 정립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
- 사업량 :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31개소(30개 시군*)
 - * 센터 미설치 시군(동두천)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지원
- 총사업비 : 1,054,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산출내역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31개소 × 34,000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31	1,054,000	-	527,000	527,000	

※ '22년 지방이양, '26년까지 5년간 국비금액 행안부 보전금으로 충당

- 사업내용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공통부모교육 운영(양육태도 점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 **행정사항**

- 예산편성 및 정산·실적 관리
 - 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방식
- 사업지원 및 실적관리
 - 공통부모교육 사업운영안내 보급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온라인 콘텐츠 개발 보급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14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도비

보육정책팀 ☎8008-4720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 배치를 통해 아이사랑놀이터 등 순회 지원 및 가정양육지원 강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31개소(30개 시군, 수원 2개소)
- 사업량 : 31명
- 총사업비 : 1,300,140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 (인건비) 2,828천원 × 31개소 × 12개월 × 50%
 - (운영비) 667천원 × 31개소 × 12개월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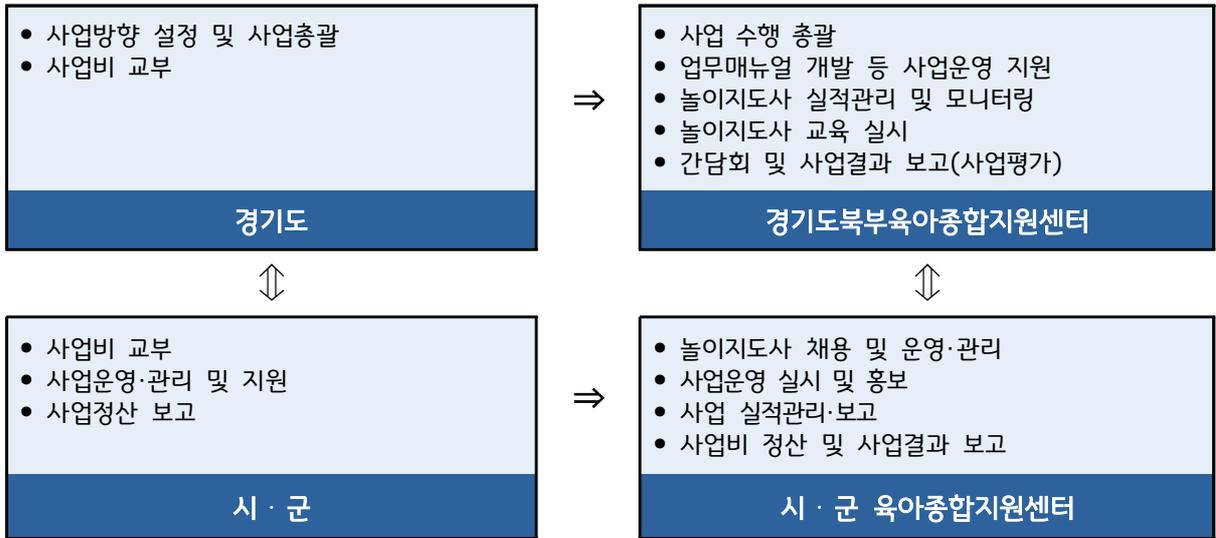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놀이지도사	31	1,300,140	-	650,070	650,070	

- 사업내용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지도사 1명씩 배치하여 관내 아이사랑놀이터 등을 순회하며 이용하는 부모 및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놀이방법 지도 및 놀이프로그램 등 지원

□ 놀이지도사 자격기준 및 급여(운영비)

구분	놀이지도사	비고
자격기준	※ 보육전문요원 기준에 준하여 선발(아래 3가지 중 하나 충족) ① 보육교사 1급 ②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③ 보육교사 2급과 보육관련 석사 취득 후 1년 보육업무 ④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3년 보육업무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 준용	
산출기준	8급 1호봉 참고	무경력인 경우
'23년 인건비	월 2,828천원	각종수당포함
운영비	예산의 20%의 범위내에서 편성	

□ 추진체계



2-15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 배치

도비

보육정책팀 ☎8008-4720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 배치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균형적인 발달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 및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31개소(30개 시군, 수원 2개소)
- 사업량 : 31명
- 총사업비 : 1,625,268천원 (도비 50%, 시군비 50%)
 - (인건비) 3,536천원 × 31개소 × 12개월 × 50%
 - (운영비) 833천원 × 31개소 × 12개월 × 50%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영유아발달지원 상담원	31	1,625,268	-	812,634	812,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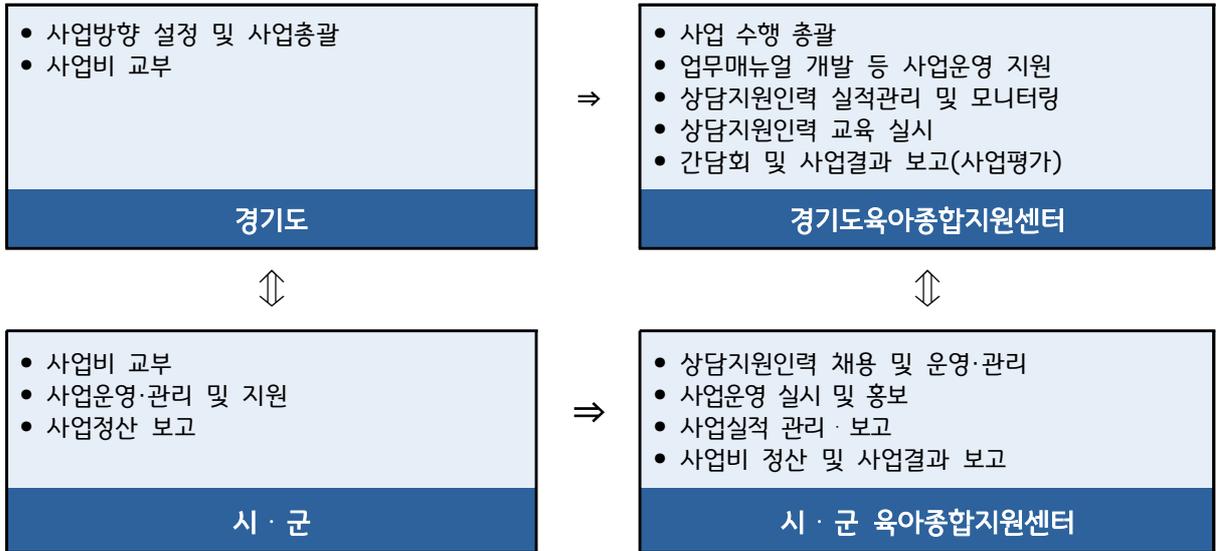
- 사업내용 : 도내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 영유아 중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발견함으로써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발달지원상담원 자격기준 및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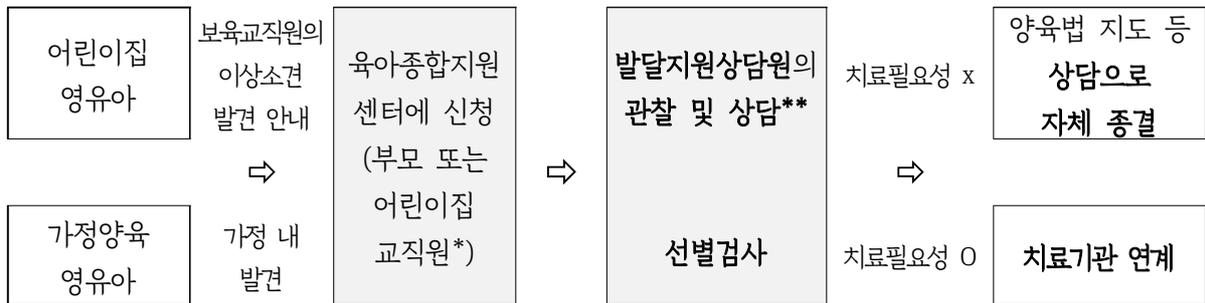
구분	영유아발달지원상담원	비고
자격기준	※ 아래 2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심리상담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중 상담 또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 1년 이상 경력자* * 채용이 어려울 시, 상담 또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 1년 이상 경력은 권고사항 ② 보육관련학과 학사졸업 및 1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급여기준	공무원 8급 기준 적용	
산출기준	공무원 8급 7호봉 참고	무경력인 경우
'23년 인건비	월 3,536천원	각종수당포함
운영비	예산의 20%의 범위내에서 편성	

□ 추진체계

○ 총괄



○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업무 체계도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신청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원 의뢰

**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발달지원상담원이 신청자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관찰

<신청방법>

○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원 서비스

- **(어린이집에서 신청)**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받은 후, 교사가 지원의뢰서 직접 작성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 **(가정에서 신청)** 보호자가 지원의뢰서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작성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

신청방법	지원의뢰서(①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②연령별 발달 적신호 ③온라인 발달체크리스트 작성 중 1가지 이상 지참 신청)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보호자작성) 작성후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접수 후 서비스 선정 결과 안내 → 선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필요한 경우 선별검사 실시)
------	---

3

양육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3-1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보육부담 완화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연 혁**

○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0~2세(어린이집 이용)

○ 사업량 : 181,210명

○ 총사업비 : 1,322,395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81,210	1,322,395,080	988,372,000	231,419,138	102,603,942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147,987,958	1,439,505,675	1,386,087,203	1,322,395,080
국비	3,094,083,000	1,067,017,000	1,038,694,000	988,372,000
도비	725,923,186	251,913,497	242,590,551	231,419,138
시군비	327,981,772	120,575,178	104,802,652	102,603,942

□ 202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 일반아동

- 적용 기간 : 2023. 1. 1.~

(단위 : 원/월)

구분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비 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14,000	599,000	0~2세반 기본 보육시간 (09:00~16:00)보육료로 지원
1세반	452,000	326,000	
2세반	375,000	221,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종일	559,000	653,000	'22년 대비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5% 인상
방과후	279,000	557,000	

○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 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 고
지원단가	4,000	5,000	'22년 대비 +800원 인상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지원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연 혁

- 2012년 3월 만 5세, 2013년 3월 만 3~4세 확대 도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 사업량 : 127,561명
- 사업비 : 556,047백만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금 100%)
- 지원내용 : 350천원/인, 월
 - 3~5세 보육료 : 280천원/인, 월('23. 3월부터 적용)
 - 누리과정 운영비(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 70천원/인, 월
 - ※ 기존 운영비외 처우개선비 6만원 및 운영비 8,140원 추가 지원
- 총사업비 : 556,047백만원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27,561	556,047,756	-	556,047,756	-	

연도별 예산내역(도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예산액	1,812,568,316	628,193,352	628,327,208	556,047,756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료 : 만3~5세 유아 1인당 280천원/월
-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70천원/인,월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60천원 지원
 - *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추가지원(60천원) 포함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자격 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60천원 지원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60천원, 2명 이상은 월 360천원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반구성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0천원)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 만3~5세 외국국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 추가 지원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
 - 도(시·군)에서는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 단,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 사용은 제한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2012년 3월 최초 시행
- 2013년 3월 3~4세까지 확대
- 2018년 3월 누리과정 및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통합
- 2018년 3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보육사업안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과 동일
 -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지원대상 관련사항 보육통합시스템(시·군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 활용

○ 사업량 : 102,682명

○ 지원기준 : 민간 3세 105천원/ 민간4,5세 82천원/ 가정3~5세 10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민간(3세)	민간(4,5세)	가정(3~5세)
수납한도액	405	382	408
정부지원 보육료	280	280	280
누리차액보육료지원금	125	102	128
부모부담보육료	-	-	-

○ 총사업비 : 97,92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02,682	97,925,559	-	24,026,694	73,898,865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07,919,007	105,657,252	104,336,196	97,925,559
도 비	76,136,921	26,200,192	25,910,035	24,026,694
시군비	231,782,086	79,457,060	78,426,161	73,898,865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방식

- 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보육료 결제권자는 보호자(부모)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 승인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제권자 등록
- 차액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차액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 계속 재원중인 유아는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
 - 출석일수가 1~ 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100%
- 유아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유아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출석인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시 입소일이 신청일

3-4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연 혁**

- 2012년 1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사업량 : 4명
- 지원내용 : 월100천원/인
- 총사업비 : 6백만원(교부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교부금	도비	시군비	
계	4	6,000	3,000	900	2,10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51,257	26,257	19,000	6,000
교부금	28,000	15,500	9,500	3,000
도비	10,767	7,017	2,850	900
시군비	12,490	3,740	6,650	2,100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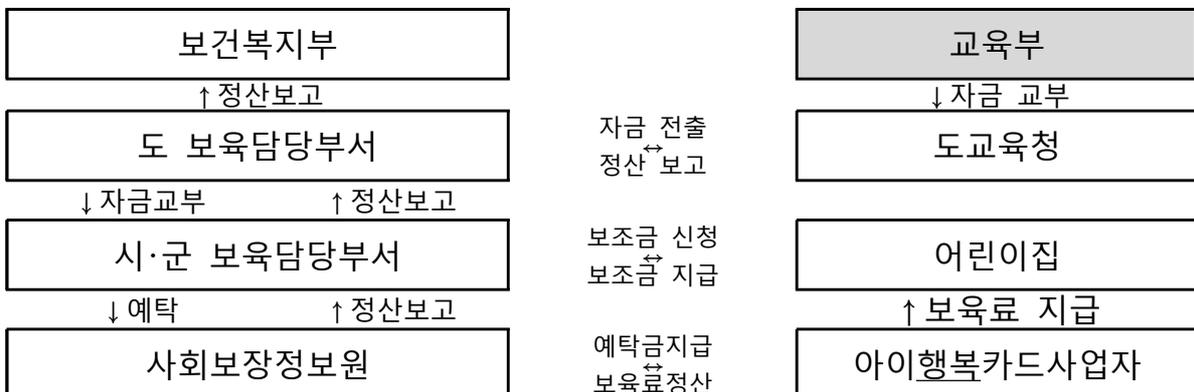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단가

구분	차상위이하 아동	장애아동
예산과목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후	100(월/인)	279(월/인)
방학중 종일제 보육	200(월/인)	532(월/인)

※ 방학중 종일제 보육료 결제 중 50%는 보조금으로 지원, 보조금 신청 시기는 보육통합시스템상 매년 별도 통보

○ 일반아동 방과후 예산 집행 및 정산



3-5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3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연 혁**

○ 2009년 7월 최초 시행,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12~86개월 영유아

○ 사업량 : 44,239명

○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단위 : 천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 ~ 23	150	177	200
24 ~ 35	100	156	
36 ~ 47		129	100
48 ~ 86		100	

○ 총사업비 : 72,781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4,239	72,781,735	54,386,495	12,736,804	5,658,436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15,285,623	333,041,550	209,462,338	72,781,735
국비	458,568,495	247,282,000	156,900,000	54,386,495
도비	107,674,986	58,282,270	36,655,912	12,736,804
시군비	49,042,142	27,477,280	15,906,426	5,658,436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12~86개월 미만 아동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①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 수료 후 퇴원 ③ 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 대상 (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아님)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매월 정액지원

(단위 : 천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 ~ 23	150	177	200
24 ~ 35		156	200
36 ~ 47	100	129	100
48 ~ 86		100	

다. 지원기간

- 시·군이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영유아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 지급 정지 시에는 정지 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라. 출생아 소급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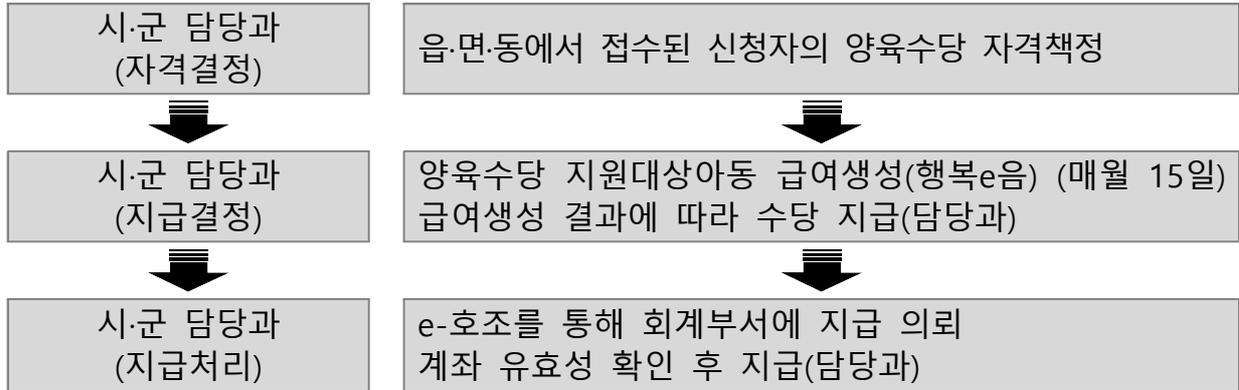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 청구의 소 등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같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21 보육사업안내 부록 2. ②지원신청, 2.조사' 내용 참고
 - (예시) '20. 1. 15. 태어난 아동에 대해 '20. 1. 30.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제기하였고 '20. 3. 30. 법원 결정이 나왔으며, '20. 4. 15.에 관할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60일 기간산정의 예외에 따라 '20. 1. 30. ~3. 30.까지의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 1.부터 소급하여 지원 가능
-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함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 및 법원 신청 결과는 추후 제출하되, 실제 양육 및 출생신고 여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중복수급 여부, 타 지자체 전출 여부 등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육서비스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마.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가 지급

바.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 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은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된 서비스 지원
 -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사.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시기 및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에게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에서 서면(우편) 고지
 - 위탁부모(또는 예비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관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와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영아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영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

□ **관련근거** : 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 제10조

□ **연 혁**

○ 2022년 최초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0~23개월 영아('22년 출생아부터)

○ 사업량 : 95,855명

○ 지원금액 : 매월 35~70만원 지급

- (0~11개월) 어린이집 미이용 시 70만원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18.6천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514천원) 지급

- (12~23개월) 어린이집 미이용 시 35만원 지급

- 현금 지급 원칙. 단, 해당 지자체 조례로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총사업비 : 653,062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5,855	653,061,803	488,487,000	114,285,817	50,288,986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800,061,042	-	146,999,239	653,061,803
국비	598,622,000	-	110,135,000	488,487,000
도비	140,010,713	-	25,724,896	114,285,817
시군비	61,428,329	-	11,139,343	50,288,986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영아(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나. 지원금액 : 매월 35~70만원 지급

- 현금 지급 원칙 단, 해당 지자체 조례로 고향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

다.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 신청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라. 지급정지

-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 및 거주불명 등록

마. 현장조사(필요시)

- 현장조사 대상
-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세대를 달리하는 부모급여 신청인이 영아를 실제 보호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
- 현장조사 수행자
- 읍면동 부모급여 담당자가 현장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 내부 협의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자 및 시군구 드림스타트 담당자에 의뢰하여 현장조사 가능
- 현장조사 절차
- 부모급여 신청 → 현장조사 실시 확인 → 부모급여 접수 → 필요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료 일부를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지원범위)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 **연 혁**

- 2006년 ~ 2021년(교사인건비)
- 2022년(어린이집 운영비)
- 2023년(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지원 개선 》

구분	현 행('22년)	개 선('23년)
방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바우처)
대상	외국인 영유아(만0~5세) 재원 어린이집	외국인 영유아(만0~5세)부모
단가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22천원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만0 ~ 5세)
- 지원내용 : 보육료 월 10만원 지원
 - * 단, 영아(만0~2세)는 관련 조례 개정 후 지원
- 지원기준 : 보호자(1명)와 아동 모두 경기도 거주자
 - * 경기도 거주 90일 초과한 자로 보호자와 아동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 확인 방법 : 최근 3년 이내 주소지가 표시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시스템상 : (보육료 지원 자격) 일반아동, (가정유형) 외국인 가정
- 사업량 : 9,997명(영아 4,902명, 유아 5,095명)
- 총사업비 : 11,01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차등보조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997	11,016,000		2,490,960	8,525,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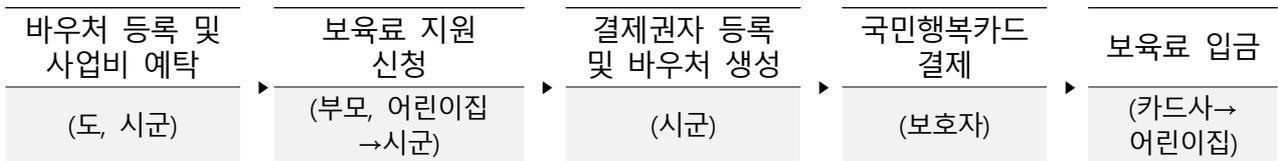
□ 연도별 예산내역(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15,243,888	2,052,000	2,175,888	11,016,000	('22년)운영비 →('23년)보육료
도 비	3,424,650	438,480	495,210	2,490,960	
시군비	11,819,238	1,613,520	1,680,678	8,525,04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절차



나. 지원신청

- 입소 당시 외국인 미등록 영유아는 ① 외국인등록, ② 경기도 90일 초과 체류부터 보육료 신청 및 지원 가능
 - * 체류기간 90일 초과한 그 다음 달부터 지원(예 : 전입일 3.15. → 90일 초과 6.13. ⇒ 7월부터 지원)
- 이용현황 미확정 및 미신청 등으로 당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예 : 3월분의 경우 6월 신청시까지 가능)
- 영유아가 도내 다른 시군(예:시흥→화성) 어린이집에 전원해도 반드시 신청서 제출
- 재원중인 바우처 미혜택 아동이 바우처 적용 주소지로(예: 다른 시·도 → 경기도) 전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다. 지원중단

- 관내 어린이집에 계속 재원중이더라도, 보호자(카드발급 명의자) 또는 영유아 중 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이 지나면 바우처 중단

▶ 체류기간 : (아동) '22.03.01. ~ '23.12.10. / (보호자) '22.03.01. ~ '23.11.10.
⇒ 조건이 유효하더라도 23년 11월까지만 지원

- * 시군에서는 지원 대상자 현황 관리(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 여부 확인 등)
(현황 관리 예시)

어린이집명	영 유 아			보 호 자			지원시작 연월	비 고 (변동 사항 등 이력 관리)
	성명	체류기간	보육 나이	성명	체류기간	관계		
○○○	○○○	'22.1.10 ~ '24.1.10	3세	○○○	'22.1.10 ~ '24.1.10	부	'23. 3월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이 중단되며, 재입국시 입국기록 확인하여 자격 재확인 후 지원
 -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지원자격 중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 내국인 어린이집 출석 인정 특례 적용
- 지원 받던 중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최근 전입일로부터 체류기간을 재산정
- 바우처 중단 후 재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신청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지원기준 미충족 사유(퇴소, 전출 등) 발견시 시·군 사업부서로 즉시 바우처 중단 요청
- 영유아 허위등록 및 허위보고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발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 취학유예 아동은 지원 제외

라. 보육료 지원 방식(내국인과 동일)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매월 영유아의 출석일수에 맞춰서 이용현황을 확정, 확정된 출석일수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

구분	출석일수별 차등지원	지원금액
입소 아동	◦ 입소일 ~ 입소월 말일 모두 출석으로 인정	일할계산 지원
퇴소 아동	◦ 퇴소월 1일 ~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	
재원 아동	◦ 출석일수 11일 이상 시	100% 지원
	◦ 출석일수 6일 ~ 10일	50% 지원
	◦ 출석일수 1일 ~ 5일	25% 지원

마. 기타사항

- 신청서의 보호자 정보는 외국인등록증의 정보와 일치되게 작성 (영문/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모두 일치)
-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카드) 결제 시, 보육료 총액이 카드로 결제되어야 함
 - * 경기도 지원금(10만원)만 별도 결제 불가
 - * 신용불량,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용,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시·군 담당자 판단하에(바우처 카드 안내, 추가결제권자(보호자 승인) 등록 등)처리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야간연장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07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 사업량 : 1,815개소

○ 지원내용 : 운영비 월 40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8,71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차등보조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815	8,712,000		2,286,240	6,425,760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6,980,800	9,134,400	9,134,400	8,712,000
도비	7,069,440	2,376,960	2,406,240	2,286,240
시군비	19,911,360	6,757,440	6,728,160	6,425,760

사업 추진 안내

- 별도의 야간연장 보육교사 또는 수당형 보육교사[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국비)가 지급되는 달만 운영비 지급 ※ 일할계산 불요, 정액 지급
- 운영비는 야간연장 보육에 따라 발생하는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등으로 활용 ※ 인건비, 급식비 사용 불가
- 어린이집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소급 지원 가능

차량기사의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21개소

○ 지원액

- 운전기사 인건비 : 월 150만원 ※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시

- 교재교구비 : 연 200만원

○ 총사업비 : 34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차등보조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1	348,000	-	91,400	256,60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044,000	348,000	348,000	348,000
도비	272,600	87,600	93,600	91,400
시군비	771,400	260,400	254,400	256,6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나. 지원요건

○ 공통사항

-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 보육

○ 운전기사 지원요건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준수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제51~53조)
 -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

다.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 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운전기사 인건비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라. 제외대상

○ 공통사항

-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 운전기사 인건비 제외대상

-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시
 -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지원시 환수조치), 시정 등 완료시 익월부터 지원

마. 지원중단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또는 통학차량 미운영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3-10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2

취약보육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22년 ~ * 경기도 정책마켓 선정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지원내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별도 채용시 인건비 지원(개소당 1명, 월 2,815천원)
- 총사업비 : 608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8	608,040		182,412	425,628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249,316	0	641,276	608,040
도 비	442,412	0	260,000	182,412
시군비	806,904	0	381,276	425,628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지원요건
 - 시장군수가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인력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실시

○ 지원단가

- 인건비(월 2,120천원), 수당(월 300천원), 사용자부담금(월 395천원)

○ 지급기준

- 간호인력을 별도채용할 경우에만 지원하되, 신규 채용자는 임면보고 후, 익월부터 지원
 - ※ 지원 요건을 갖추고 월 15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되 사군에서는 인건비(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포함)는 어린이집으로 지급하고, 수당은 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 수당의 경우 개인별 입금계좌에 “00월 간호인력 수당” 표시
- 보육교직원 전원 4대보험료 납부 완료 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주요역할

- 장애아동 등 대상 건강지도, 응급처치 등 지원

- (건강지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건강지도, 담임교사 대상 보건교육 지원, 원아 대상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업무 지원
- (의료활동) 외상 등 다친 아동 대상 적절한 처치, 응급을 요하는 아동에 대한 응급처치 아동의 투약과 관련한 가정과의 연계,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이송 지원 등
 - ※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석션, 위루관 영양공급 등)는 수행 금지
- (건강검사) 아동 건강검진 관리, 신체발달 관련 업무 지원 등

○ 지원제외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취소 또는 간호인력 미채용
 -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시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지원 제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긴급비상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 **연 혁**

○ 사업시행 : 2013년(경기도 2014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 영아

○ 사업량 : 92반(남부 68, 북부 24)

○ 지원내용 : 시간제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지원

구 분	제공기관
대 상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관련시설
인건비	보육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운영비	○ 지원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금 75%(3,000원) + 부모부담금 25%(1,000원)] (월 80시간 이용 가능)
주요역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건

- 10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충족시
- 70% 지원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 중 2개 조건 충족시

구분	관 리 기 관
대상	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3명, 북부1명)
인건비	(관리자)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 3. 1.부터 적용
운영비	월 110만원(남부), 70만원(북부)
주요역할	상담, 예약 및 모니터링 등 지원.관리
비고	2017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총사업비 : 4,77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614,788	2,325,000	1,191,197	1,098,591	
시간제 제공기관	92개반	4,444,788	2,240,000	1,111,197	1,093,591	국50%:도25%:시군25%
시간제 관리기관	2개소4명	150,000	75,000	75,000		국 50%:도 50%
시간제 인프라구축	2개소	20,000	10,000	5,000	5,000	국50%:도25%:시군25%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8,593,434	9,204,431	4,774,215	4,614,788
국비	9,379,000	4,658,000	2,396,000	2,325,000
도비	4,757,653	2,330,960	1,235,496	1,191,197
시군비	4,456,781	2,215,471	1,142,719	1,098,591

□ 사업 추진 안내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육아종합지원센터
- 2) 어린이집
-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

* ‘보육 관련 시설’은 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예시 : 아동회관), ② 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육 관련 시설로 함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관리 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인력 관리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어린이집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직종(직위)	• 보육교사(담임교사)	
채용·관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 • 경력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 •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의 시간제 보육반 담임교사의 호봉인정 및 승급기준은 이 지침이 정한 ‘국고보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호봉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채용조건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 ○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 ○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교사 채용 및 관리 ○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2015. 1. 1.~)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 등 이용실적 (1개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건수 20건 이상, 이용아동수 2명 이상, 이용시간 4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 지원 -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아동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100% 지원 ※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제공기관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100% 지원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단, 참여 포기의 경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정취소일까지 지원 가능)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현장점검 또는 수시점검 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p>(인건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 호봉별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4호봉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을 지원 조건에 따라 70% 또는 100% 지원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기타 보육교사 대상 수당은 각 요건 충족 시 별도 지원 가능 <p>(운영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조건에 따라 월 22.4만원 또는 32만원(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았으나 리모델링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1년에 10%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

* 지원기준 미충족 시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단, 개시 1년 미만 제공기관은 사업 개시 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반 등록 기준

*** 이용실적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지원내용) •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을 시작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승급* 가능),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18.3.1일부터 적용
	(운영비 지원내용) • 관할 제공기관 10개소까지는 기본 50만원 지원, 이후 관할 제공기관 5개소 단위로 5만원 추가 지원 ※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마. 운영 기준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구 분	내 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1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 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기본보육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3

※ 시간제보육반은 탄력편성 불인정

3) 운영시간

○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분	월	화	수	목	금
운영 시간	09:00 ~ 18:00				

※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

4)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1661-9361)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 ※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영아는 이용 불가(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이용가능)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에게 급식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과 보육서비스 제고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연 혁

- 사업시행 : 2019년 7월 ~
-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 : 2022년 1월 ~ (어린이집 현원 기준별 차등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급식비 :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 운영비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 * (제외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 ** 기본보육 이용 아동에 한해 지원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기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연장보육·야간연장 등 이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사 업 량 : 323,801명(정부미지원 240,613명 / 정부지원 83,188명)
- 지원내용 : 급식비 7,400원/인·월, 운영비 12,600원~14,600원/인·월
 - * 운영비 상한선 개소당 월 1,260,000원
- 사 업 비 : 65,51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급식비	운영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323,801	240,613	65,512,337	19,653,702	45,858,635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78,308,306	42,852,254	69,943,715	65,512,337
도 비	53,492,492	12,855,676	20,983,114	19,653,702
시군비	124,815,814	29,996,578	48,960,601	45,858,635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예) 1월 2일(월), 3월 2일(수), 4월 3일(월), 7월 3일(월), 10월 2일(월)

** 어린이집 미신청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개월 소급 지원 가능

○ 급식비 지원(아동 1인당, 1일)

- 영아(0~2세) : 2,470원(정산 기준 2,270원)

* 1,900원(정부지원 급식비)+370원(어린이집 운영지원)+200원(건강과일 공급사업, 현물)

- 유아(3~5세) : 3,070원(정산 기준 2,870원)

* 2,500원(정부지원 급식비)+370원(어린이집 운영지원)+200원(건강과일 공급사업, 현물)

○ 현원 규모별 운영비 차등지원

(단위 : 원)

구 분	지원단가
급식비	1인당 7,400
운영비	1인당 12,600~14,600 (개소당 최대 1,260천원)
40명미만	1인당 14,600
40명이상~100명미만	1인당 12,600
100명이상	개소당 1,260,000

○ 집행내용

- 급식비 : 중식 1회, 간식 2회에 필요한 급·간식재료비 지원

- 운영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210(관리운영비), 310(기본보육활동비)에 포함된 해당 항목만 가능

* 기본보육활동비 5,000원 이상 집행 권고

○ 집행기준

- 급·간식 재료비의 최저기준 적용

•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서 정한 최저기준 금액(아동당 일370원, 월7,400원)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재원아동이 아닌 실제 출석아동을 기준으로

최저기준을 초과 지출하는 것을 권장함 * 초과지출은 최종 급식비 지원예산 범위내 가능

- 출석아동 감소에 따른 급·간식 재료비 절감분의 사용
 - 출석아동 감소(코로나19 관련 휴원 포함)로 인해 발생하는 급·간식 재료비 절감분은 당해연도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은 급·간식 재료비로만 사용 가능
 - * 운영비, 인건비, 보육활동비 등 급간식 재료비 이외 다른 항목으로 사용 불가
 - ** 코로나19 상황 해지이후에도 급간식비 이월 사용 가능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교부)기준
 - 코로나19 관련 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긴급보육으로 출석아동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 : 현원 100명 / 긴급보육 30명일 경우 30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월 현원 기준 으로 미지원된 아동수의 급식비를 추가로 교부 가능

○ 지원절차

- (신청 및 지원) 지원 아동 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보조금 신청기간에 신청 후 시·군에서는 내역 확인 후 급식비와 운영비 각각 입금
- (집행) 보조금 관련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수
- (정산) 급식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시군 자율 정산

○ 지원제외

- (급식비, 운영비)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운영정지 종료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 제외
 -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운영비) '22.12.31일까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및 미인증 어린이집
 - ※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미가입 및 미인증 명단은 관련 팀(도 보육 품질관리팀)에서 추후 별도 안내
 - ※ 신규개원, 휴·폐지 및 대표자 변경 후 재운영하는 경우 道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가입 및 인증 완료 어린이집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 단, 신규 개원 및 재운영 익월까지 가입 및 인증 미완료 시 '23년 지원 제외
 - 매월 10일 이후 인증 완료 시 익월부터 지원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B등급 이상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22년말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제외
 -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정원 충족율 85%미만),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간 협력 사업 참여 어린이집 우선지원
- 사업량 : 8,349개소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놀이, 미술, 언어,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연 평균 100만원
 - * 시군에서 예산범위, 지원시점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 감안하여 조정 지원 가능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3,618,942	4,643,952	4,720,833	4,254,157
국비	8,139,000	2,754,000	2,835,000	2,550,000
도비	3,774,167	1,281,329	1,312,204	1,180,634
시군비	1,705,775	608,623	573,629	523,523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지원기준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액 전액 환수

농어촌소재,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장애영유아 통학 편의 증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23개 시군, 1,143개소, 1,735대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1,129개소, 1,714대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4개소, 21대
- 사업내용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실제로 통학차량으로 운영 하는 차량 지원
- 지원기준 : 차량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 지원방법 : 반기별로 분할 지원
 - * 시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등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2,870,421	4,564,966	4,336,478	3,968,977
국비	7,553,000	2,650,000	2,574,000	2,329,000
도비	3,498,778	1,231,902	1,188,158	1,078,718
시군비	1,818,643	683,064	574,320	561,259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해 차량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액 전액 환수

보육수요가 낮아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하여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 사업량 : 35개소

○ 지원내용 : 냉난방비, 공과금,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

○ 지원기준 : 개소당 월 200~280천원

- 정원충족률에 따라 차등 지원, 정원충족률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익월 지원

※ 지원단가

(단위 : 천원 / 월)

정원구분	60인 이하	61~80인	81~100인	101~120인	121인 이상
60%이하	240	250	260	270	280
61~80%	220	230	240	250	260
81~100%	200	210	220	230	24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86,776	99,147	101,396	86,233
국비	169,000	58,000	60,000	51,000
도비	79,379	27,315	28,140	23,924
시군비	38,397	13,832	13,256	11,309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차등보조)

□ **행정사항**

○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지원 신청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허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액 전액 환수

4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권리존중 확산

4-1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바.영유아보육법)

□ **연 혁**

○ 시행시기 : 2000년(정부지원), 2003년(정부미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원장·조리원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장애아전문·통합 및 일반 어린이집 치료사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 관리시 지원**)

*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에 포함된 일급형 대체인력은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

** 최소 인력풀 인력이 1명 이상(전월 말일 기준)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다수일 경우 인력풀 관리나 인력 확충 담당자 지원 가능('23. 3월부터 적용)

○ 사업량 : 55,684명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액
정부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50천원/인
	원장, 조리원	
	치료사	월400천원/인
정부미지원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200천원/인
	치료사	월45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110천원/인
	월급형 대체교사	월120천원/인 (단, 파견일수 17일 미만시 30천원 차감*)

○ 사 업 비 : 111,132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5,684	111,132,240	-	25,769,160	85,363,08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41,140,080	117,908,880	112,098,960	111,132,240
도 비	80,081,832	27,628,836	26,683,836	25,769,160
시군비	261,058,248	90,280,044	85,415,124	85,363,08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① 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월 5일 이내 휴가,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를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하며, ③~⑤은 동일 월에 최대 5일까지 인정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효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지급 가능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지원

*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휴원일,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일,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일은 근무일수로 포함

- 담당반의 영유아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영유아가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영유아를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자인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함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처우개선”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세부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 보육교사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리원은 지원기준 적합자 전원, 보육교사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복지관, 학교·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및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관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직원(임시교직원)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인력,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바.영유아보육법)

□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포함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

- 월급형 대체교사*(단, 관리자는 인력풀 관리시 지원**)

* 경기도 대체인력 인력풀에 포함된 일급형 대체인력은 지원기준 적합시 지원 가능

** 최소 인력풀 인력이 1명 이상(전월 말일 기준)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다수일 경우 인력풀 관리나 인력 확충 담당자 지원 가능('23. 3월부터 적용)

- 누리과정담당 보육교사

○ 사업량 : 50,273명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액
반담당 보육(특수)교사, 월급형 대체교사	정부지원	월80천원/인
	정부미지원	월30천원/인
누리과정담당 보육(특수)교사		월90천원/인

○ 사업비 : 32,693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0,273	32,693,400	-	16,346,700	16,346,70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01,068,920	34,558,320	33,817,200	32,693,400
도 비	50,534,460	17,279,160	16,908,600	16,346,700
시군비	50,534,460	17,279,160	16,908,600	16,346,700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월급형 대체교사도 동일 기준 정부지원 단가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① 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월 5일 이내 휴가,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를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하며, ③~⑤은 동일 월에 최대 5일까지 인정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효인력 어린이집 지원시 지급 가능
※ 월급여 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지원

*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휴원일,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일,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일은 근무일수로 포함

- 담당반의 영유아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영유아가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영유아를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종인 보육교사에게 지급함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처우추가”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세부 지원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기준 적용, 그 외에는 정부미지원 기준 적용(기관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
 -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명단을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매년 2회(1월, 7월)씩 도에서 시·군에 통보
-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야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반 담임교사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

나.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인력,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추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3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일정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바.영유아보육법)

□ 연 혁

- 시행시기 : 2002년, 2012년(다문화), 2018년(영아심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구 분	지원액	대 상	전문교사 요건
영 아 전문교사	월5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반 담당교사 ※ 일시보육반(0,2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월3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 20시간 이수자
다 문 화 전문교사	월5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전문 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장 애 아 전문교사	월100천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반 담당교사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 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육교사 교육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2012년까지 시행)" 240시간 이수자 ②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③ 유자격자로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된 특수교사, 치료사

-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조
- ※ 원장(대표자) 겸임교사는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전문교사는 직무교육 이수시 "특별직무교육" 과정 이수

- 사 업 량 : 39,632명

- 사 업 비 : 21,68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명,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39,632	21,679,560	-	5,045,688	16,633,872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1,373,600	19,094,480	20,599,560	21,679,560
도 비	14,492,364	4,485,912	4,960,764	5,045,688
시군비	46,881,236	14,608,568	15,638,796	16,633,872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기준(일할계산 지급 금지)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
 -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① 근로자의 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③ 월 5일 이내 휴가,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를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하며, ③~⑤은 동일 월에 최대 5일까지 인정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지원
 - *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휴원일,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일,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일은 근무일수로 포함
- 담당반의 영유아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영유아가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 영유아를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근로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함
- 영아전문교육과 심화교육에 한하여 특수근무수당 병급 가능
- 신규 대상자일 경우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임시교사)가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 개인별 입금계좌에 “○○월 경기도 특수근무” 표시 일원화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나. 제외대상

- 보조교사, 월급형 대체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채용) 및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일급형 대체인력, 야간연장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 야간연장교사(별도 채용된 6시간 이상 근무자)중 영아만 보육시 영아전문교사 수당 지급 가능(매월 1일 현원기준, 주말·공휴일은 익일 기준)
 - ※ 단 0세아 전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야간연장교사(6시간 이상 근무)는 지급 가능

다. 유의사항

- 보육(특수)교사는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
- 보육교사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증,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자격확인서 등 지급요건 증빙서류 확인 철저
 - ※ 보육교사교육원 현황은 본 지침 양성교육기관 참조
-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4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8008-2574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3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교사겸직원장, 교사겸직대표자,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조리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 보육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량 : 16,745일, 30개소
- 지원내용 : 보육교사(91천원/일), 조리원(77천원/일), 운영비(인원별 차등) 지원
- 사업비 : 1,551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일/개소)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6,745/30	1,551,185	-	390,177	1,161,008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413,677	1,686,834	1,175,658	1,551,185
도비	1,126,421	426,666	309,578	390,177
시군비	3,287,256	1,260,168	866,080	1,161,008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지원 대상			
			담임 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야간 연장보육교사)	교사겸직 원장·대 표자	조리원	
대체교사 국비기준 준용 ※일부 조정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	○	×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	○	○	
	연가	1~20일	○	○	○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1일	○	○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1일	○	○	○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	○	○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 등	1~10일 최대 10일	○	○	○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	○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	○	○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	○	
경기도 자체기준	병가	5일 이상 입원	○	×	○	
	출산전후휴 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 자체 운영 포함)	2일 이내	○	×	×

* 감염성 질환 등으로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국비 대체교사 동일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우선 이용

※ 급여를 받는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경기도 자체기준 지원가능

※ 소규모 어린이집 장기근속자, 취약보육시설 우선 지원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직원에 대체인력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나. 사업관리

- 채용방법(원장 채용)
 -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인력풀 활용 및 연계
 - ※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활용
 -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모집
- 자격조건
 - 보육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자 및 특수교사는 동일 자격 소지자 우선채용
 - 조 리 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권장
 - ※ 식품위생법상 배치된 조리사(50인 이상 식사제공)의 대체인력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함. 이외(50인 미만 식사제공)에는 자격 소지여부 무관하게 지원가능
- 인력관리: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교직원 관리 및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기준 준용
 -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자격확인, 경력관리 등 준용

다. 지원기준

- 지원단가
 - 보육교사 : 일 91,410원/인(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 2023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적용(변동시 동일적용)
 - ※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간)으로 함. 단, 근무도중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시급(11,430원)으로 지급 가능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조 리 원 : 일 77,000원/인(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 일 8시간 미만 근무 시, 시급(9,630원)으로 지급 가능, 기존 조리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추가근무가능(단, 최대 8시간)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운 영 비 : 월급형 대체교사 인원구간별 차등지원(반기별 지원/연 2회)
 - 지원액

인 원	1~10명	11~20명	21~30명	31~40명	40명이상
운영비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 인원기준 : 시군 센터별 '22.12월말(상반기), '23.6월말(하반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채용인원(관리자 포함)

- 집행기준 : 대체교사의 교통비 및 제 수당으로 50%이상 지원, 그 외 사업추진 (월급형 및 일급형 인력풀 관련 포함)에 필요한 운영비(홍보 및 교육 등)로 사용
 - ※ 지역별 특성 및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 불가피 한 경우 시·군의 승인을 통하여 제수당의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 가능
 - ※ 운영비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와 자산물품취득 및 시설개선비 사용은 불가함

○ 지급방식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 사전 또는 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준용
 - ※ 단, 조리원의 경우 만65세까지 대체인력 지원가능
-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라.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대체인력에게 사업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시·군에서는 대체인력 임면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금지
 - ※ 채용신체검사서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와 관련하여 경찰청 온라인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활용하여 불편 최소화
 - ※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풀 인력과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력풀에 포함된 인력의 유효기간이 있는 임면서류의 만료일을 확인·관리하여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재등록과 연도전환 등 조치 필요
- 본 지침 외 사항은 「2023년 보육사업안내」 준용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교사 확충에 기여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바.영유아보육법)

□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
 -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농정부서)에서 '16년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부서)로 이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치료사 포함)
- 사업량 : 8,343명
- 지원내용 : 월 110천원/인 지원
- 사업비 : 11,01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8,343	11,012,934	6,485,000	2,997,452	1,530,482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7,498,365	14,161,931	12,323,500	11,012,934
국비	22,068,400	8,248,000	7,335,400	6,485,000
도비	10,205,402	3,828,803	3,379,147	2,997,452
시군비	5,224,563	2,085,128	1,608,953	1,530,482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 > 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대상지역 참고)

나. 지원대상

- ①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받을 받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② 치료사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조건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 ① 근로자의날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 ※ 단 ③~⑤ 은 동일 월에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5일까지 인정

○ 코로나19관련 처우개선비 지급특례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된 경우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 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액 지급)

라. 지원단가 : 월 11만원

마. 지급 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 승인 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월 포함 3개월)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정부가 농촌 등 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4-6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 8008-2574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바.영유아보육법)

□ 연 혁

- 시행시기 : 담임교사(2012년), 연장보육 전담교사(2020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사업량 : 41,371명
- 지원내용 : 담임교사 월 260천원/인, 연장보육 전담교사 월 130천원/인 지원
- 사업비 : 114,051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41,371	114,050,620	68,370,000	31,617,666	14,062,954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70,513,839	130,558,112	125,905,107	114,050,620
국비	221,520,163	77,483,439	75,666,724	68,370,000
도비	102,575,480	35,986,111	34,971,703	31,617,666
시군비	46,418,196	17,088,562	15,266,680	14,062,954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

- ①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 ② 연장보육 전담교사
- ③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
- 담임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비담임교사, 보조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담임교사를 대체하지 않는 대체교사(단,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기본보육) 담당교사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동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다. 지원조건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 ① 근로자의날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 단 ③~⑤ 은 동일 월에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5일까지 인정

○ 코로나19관련 처우개선비 지급특례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된 경우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주 30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 지원 가능

라. 지원단가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8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마.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원장은 지원대상자가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 승인 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지원대상자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 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직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적용 제외)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바.영유아보육법)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 사업량 : 7,000명
- 지원내용 : 월 75천원/인 지원
- 사업비 : 5,94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000	5,942,840	3,386,000	1,597,571	959,269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5,937,622	5,398,501	4,596,281	5,942,840
국비	9,358,000	3,209,000	2,763,000	3,386,000
도비	4,368,658	1,491,995	1,279,092	1,597,571
시군비	2,210,964	697,506	554,189	959,269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목적

-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지원조건

- (기본원칙)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
- (예외 적용)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무일수로 적용 가능한 범위

- ① 근로자의날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
-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월 5일 이내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
- ④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
 - *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⑤ 어린이집 내규에 따른 5일 이내의 경조사 휴가
 - ※ 단 ③~⑤ 은 동일 월에 중복인정 불가하며, 최대 5일까지 인정

- 코로나19관련 처우개선비 지급특례

- 코로나19관련 휴무일 근무일수에 포함

- ①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경우
- 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업무배제 권고를 받은 경우
- ③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④ 어린이집 파견 예정이던 대체교사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파견 취소된 경우
- ⑤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출근 중단된 경우

라. 지원단가 : 월 7만 5천원

마.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원장이 담임교사로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는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어린이집 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준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담임(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사업량 : 994명
- 지원내용 : 대체교사 인건비 월 2,342천원/인(8시간 기준) 지원,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한 대체교사 일 91천원/인(8시간 기준)
- 총사업비 : 27,937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994	27,937,133	16,633,000	7,722,910	3,581,223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79,251,448	20,180,294	31,134,021	27,937,133
국비	47,090,000	11,862,000	18,595,000	16,633,000
도비	21,920,670	5,545,244	8,652,516	7,722,910
시군비	10,240,778	2,773,050	3,886,505	3,581,223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토요일은 미지원
 -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10일) 참석, 본인 결혼(주중 1~5일, 최대 5일), 연가(주중 1~15일, 최대 15일),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모성보호, 가족상, 본인 질병·사고 등)발생 시 지원
-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필요 시 증빙자료 제출

- 지원 사유에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는 경우, 센터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에 추가로 대체교사 지원
 - ※ (예시)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교사 지원(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장애영유아·다문화 영유아 등 취약 보육 지원(취약 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 단, 추가 지원 당일에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 등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 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라. 지원방식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 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사업기간) '23년 1월 ~ '23년 12월
-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협약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지원단가) 월 2,342천원, '23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 월 2,011천원/인(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대체교사 관리자는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체교사 30명당 관리자 1명을 추가하여 둘 수 있음 ○ 기본교통비(관리자 제외) : 월 100천원/인 ○ 관리자 기본수당 : 월 300천원/인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 법정비율 준수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대체교사 사업 관리운영(인사노무 관리 자문 비용 포함)과 관련된 사항에 집행 - 별도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하여 집행 ○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수당 추가 지급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 지원, 원거리 지원, 상시적인 근무지 변동 등의 경우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추가 5%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적정 여비 지급 가능(다만 기본교통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또는 자차를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 ※ 이 경우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대체교사 관리자는 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채용 가능한 자격 미소지자의 대체교사 관리자 근무경력은 보육 등 이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수요, 보수교육 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체교사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채용된 어린이집은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간제 대체교사를 무기계약직 심의 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시·도는 대체교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유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대체교사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교육을 위하여 대체교사 예산에서 보수교육(직무교육) 수준의 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음
 - 시·군·구에서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및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풀에 포함된 인력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바. 유의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미배치되는 대체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희인력 지원 등 적극 활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및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됨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_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다. 지원내용

- 지원단가: 일 91,410원(8시간 기준)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임면보고 관련 구비 서류 제출 불요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 증빙서류 :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마.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놀이·학습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준용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 및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율 50% 이상)
- 사업량 : 17,750명(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량 포함)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월 1,042천원/인 지원
- 총사업비 : 230,258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연장보육전담교사 사업비 포함)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단위 :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7,750	230,258,061	137,802,000	63,837,148	28,618,913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653,402,015	203,801,518	219,342,436	230,258,061
국비	389,986,957	120,721,957	131,463,000	137,802,000
도비	181,163,976	56,176,637	61,150,191	63,837,148
시군비	82,251,082	26,902,924	26,729,245	28,618,913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

①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방과후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②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영아반) 만0세·1세·2세아반, 혼합반(만0·1세), 혼합반(만1·2세), 시간제보육반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예시 :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3명) 운영 시 ⇒ 정원 77명으로 간주)

2) 지원 제외 대상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지원인원

‘1) 지원대상’ 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 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1명씩 추가 지원 가능(1개소 당 지원 인원 상한 없음)

① 장애아 현원 3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② 영아반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정원충족률 50% 이상)

지원기준별 보조교사 지원인원(예시)						
지원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비고
장애아 현원(명)	3~5	6~8	9~11	12~14	15~17	• 기준 충족 시 6명 이상 지원도 가능 • 반 수 산정 시, 유아반은 2개 이하인 경우에만 포함
영·유아반 수(개)	2~4	5~7	8~10	11~13	14~16	

나. 세부기준

○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운영 가능(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우선 지원(전문>통합, 장애 영아 현원 수 고려)
-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우선 지원
-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우선순위 선정시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22.3월부터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지급 예정) 어린이집인지 여부 고려(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대(多)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표창 내역, 행정처분 이력, 영아반 수 고려 등

- ‘가. 지원기준’ 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시 정원충족률 50% 미만도 선정 가능

다.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 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 (지원단가) ‘23년 1월부터 적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42천원* 지원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 * (참고) III.보육교직원 자격 > 4.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채용 곤란 시 ‘장애아 과정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 를 채용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채용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전제로 배치

- (업무내용)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되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담임교사의 업무>

- 담당 반의 보육과정 및 일과운영
- 등·하원 및 출결관리
- 영유아의 식사·낮잠 생활습관 등의 지도
-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원아수첩, 보육일지, 관찰일지, 투약일지 등)
- 학부모 상담 등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 발생시 보육 업무 대행 가능
- 이때,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 '23년 3월 ~ '24년 2월

마. 지원 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지원기준’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
 - '23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영아반 수 등 지원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23.3~'24.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단,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후 기준 충족시 지원
 - 보조교사 지원기관 선정 시 지원 제외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하지 않도록 유의
- (채용 및 임면보고)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임면승인)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 (인건비 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보육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근무일수가 한 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인건비 산정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 유의사항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예시) '23.1월~12월 중 적발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24년, '25년은 보조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하여 보육 교사 업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

※ 참고용으로 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준용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연 혁

○ 시행시기 : 2020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연장반 구성되어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과 총 이용시간 기준을 충족하며, 전자출결시스템이 적용된 어린이집
- 사업량 : 보조교사 인건비 사업량 참고
-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보조교사 예산포함) 월 1,042천원/인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30천원/인 지원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
 - ①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②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 (기준) 전월 연장반 현원이 월 1회 이상 정원의 50%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③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반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아동 포함 시 월 20시간도 가능), 유아반 월 80시간 이상
 - * (기준) 전월 말 연장반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④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지자체에서는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연장 반 수 고려 등
-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우선순위 선정시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 어린이집인지 여부 고려(0세반 운영 여부 및 0세반 수 고려)

나. 지원 제외 대상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단,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다. 지원 인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의 연장반별로 교사 1인 지원

라.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책임지고 연장보육을 계획·운영하고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
-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가능(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보조교사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겸임할 수 있으며, 야간연장 보육교사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겸임 근무 가능

마. 지원 단가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42천원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30천원 지원
 -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할 경우 보수는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와 수당을 지급.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에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전담수당 지급 가능
 -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 *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바. 자격 조건

- 보육교사, 특수교사

사. 사업기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아.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선정) 어린이집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연장반 정원 50% 이상 충족 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가능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 아동 또는 이용시간(17:00 이후~) 감소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개월까지(미충족하는 달 포함) 인건비 지원(이후는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부담)
- ※ 단,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용 아동 기준 또는 이용시간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시 지속 지원가능
- (채용 및 임면 등) 채용 절차, 임면, 인건비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교사 지원 규정 준용

자. 유의사항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담임교사가 예외적으로 연장반을 보육할 수 있음
 -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다만, 이 경우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농어촌 지역인 경우
 -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활용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연장반에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운 경우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 지자체에서는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ㄴ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어린이집에서 부담)하며, 과오지급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환수 조치
 - ㄴ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동안 연장보육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 미수행, 기본반 아동의 하원 차량에 동승 금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폐쇄가 확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해당 월 인건비는 운영정지일 또는 폐쇄일 이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임할 경우, 연장보육료는 지원됨에 따라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하여야 함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12,738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안단체등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 지원내용 : 호봉에 따른 월 급여액의 80%(원장, 영아반 교사), 30%(유아반 교사) 지원
- 총사업비 : 301,743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명)	사업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2,738	301,743	180,322	83,351	38,070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852,633,806	257,305,520	293,585,100	301,743,186
국비	508,241,300	151,872,000	176,047,300	180,322,000
도비	235,189,154	70,575,568	81,262,667	83,350,919
시군비	109,203,352	34,857,952	36,275,133	38,070,267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5,192명
 - 영아전담 357명, 장애아전문 330명, 야간연장 1,870명, 장애아통합 2,635명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 내용
영아전담	• 월지급액의 원장·영아반교사 80%, 유아반 30%, 조리원 1명 100%
장애아전문	• 월지급액의 원장·보육교사 80%, 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80%+월30~40만원(수당), 치료사 100%+월40만원(수당), 조리원 1명 100% ※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자격소지자 : 월 수당 15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 월 수당 15만원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 월 수당 10만원
야간연장	• 정부지원시설 : 월지급액의 80%, 최대 5명 • 정부미지원시설 : 1인당 1,730천원 ~ 2,306천원, 최대 5명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 반별 475천원, 최대 5개반
장애아통합	• 정부지원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 민간지정시설 :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46천원 ※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수당은 "장애아전문"과 동일

- 총사업비 : 84,75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차등보조

구분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192	84,756,199	50,491,1000	23,462,125	10,803,074	

※ 경기도 본예산 기준(보건복지부 가내시 반영)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39,086,227	76,167,465	78,162,563	84,756,199
국비	142,007,000	44,737,000	46,779,000	50,491,000
도비	66,077,559	20,908,856	21,706,578	23,462,125
시군비	31,001,668	10,521,609	9,676,985	10,803,074

4-13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국·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4726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로 보육에 필요한 인성 및 지식·능력 개발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공공성 마인드 함양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사업개요

- 사업량 : 7,086명
- 지원대상 : 경기도 어린이집 현직 보육교직원
- 지원기준 : 직무교육(8만원), 승급교육(14만원)
※ 장기 미종사자교육(8만원/자부담), 원장사전직무교육(16만원/자부담)
- 교육과정 및 대상

구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 직무
	원장일반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1급	2급	
교육대상	원장직무 담당 이후 2년이 지난 경우	현직 보육교사로 근무경력 2년이 지난 경우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수행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근무경력 2년이 지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근무경력 1년이 지난 경우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교육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 총사업비 : 704,5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086명	704,500	421,000	195,310	88,190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441,100	904,000	832,600	704,500
국비	1,449,500	536,000	492,500	421,000
도비	674,400	249,460	229,630	195,310
시·군비	317,200	118,540	110,470	88,190

※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계획 시행 예정('23. 3월 중)

영아·다문화 보육의 전문교육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품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사업개요**

- 교육과정 및 대상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인원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	· 교육 희망 보육교사	4,900명
	영아전문심화과정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후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800명
	다문화전문과정	· 교육 희망 보육교사	520명
	합 계		10,220명

- 교육기관 : 경기도 보육교사교육원 7개소
- 교육과정별 시간 및 수강료

과정명		교육시간	수강료	비 고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44만원	교육비 자부담
	영아전문 심화과정	20시간	10만원	
	다문화전문과정	160시간 (이론 100, 실습 60)	44만원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교사교육원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추진
 - 해당 시·군에서 재직(경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정
 - ※ 영아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교사, ②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사, ③ 낮은 연령반 보육교사(0세반 교사 우선)

- ※ 영아전문심화교육 선발 우선순위 :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을 이수한 이후 보육교사 업무경력이 많은 순서로 선발(수료증과 경력증명서로 확인)
- ※ 다문화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 만 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평가 인증 어린이집 교사, ② 평가미인증 어린이집 교사 ③ 기타 희망자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평가 성적(100점 만점) 80점 이상인 자
-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수강 필수
- ※ 영아전문심화과정은 제외

《수강방법》

1.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www.dre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방법 1) 직업교육 → 온라인과정 → 취업 → 교육, 컨설팅 →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수강신청
 (방법 2) 상단 검색창에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입력 후 수강신청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센터(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하반기 교육 참여가능

○ 수료자 관리

- 교육원 : 수료자 명단을 해당 시·군으로 통보
- ※ 영아전문·다문화전문 교육과정의 경우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이수 확인 후 교육생의 교육 수료처리
- 시·군 : 인사기록부에 교육 이수사항 기록 관리
- 교육과정별 수료자 인센티브

과정명		수료자 인센티브
전문 교육	영아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영아전문심화과정	· 특수근무수당(월3만원 / 인) 추가 지원
	다문화전문과정	· 특수근무수당(월5만원 / 인) 지원

※ 영아·다문화전문 교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원 불가. 단, 영아심화 수료시 3만원 추가 지급

- 영아전문(심화)·다문화전문 교육과정 운영은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대상으로 참여형 실무 사례중심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로 특수보육의 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평가) 및 제19조(비용의 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수원시 등 16개 시·군
- 사업비 : 278,000천원 (도비 83,400, 시·군비 194,600)
- 교육인원 : 278명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재직중인 보육교사)
※ 1인당 교육비 1,000천원 (강의 3회, 워크샵·컨설팅 4회, 순회자문 2회)
- 사업내용 : 다양한 장애유형별 대응능력 향상 등 사례중심 교육으로 장애전문(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역량 강화

□ **연도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48,000	29,500	40,500	278,000
도비	104,400	8,850	12,150	83,400
시군비	243,600	20,650	28,350	194,600

□ **사업추진 안내**

[운영방법]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추진

[추진방향]

-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인원 다운, 교육수준 업」 교육을 통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역량강화 효과 증대
 - 이론위주 교육 탈피, 보육교사의 요구도에 부응하는 고퀄리티 교육 추진으로 참여도 증대
 - 심화교육, 컨설팅, 슈퍼비전 등 소그룹 실무사례중심 교육으로 장애 유형의 다양성 대응능력 향상 제고

- 교육대상에 장애통합어린이집 일반교사까지 포함하여 장애아전담 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상호 공감대 형성 및 장애아 보육 내실화
 - 장애아 보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애아전담교사 뿐 아니라 일반 교사의 장애아 보육에 대한 기본적 이해과정 교육 필요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통한 「道 - 시군 - 육아종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취약보육 및 보육교직원 교육 관련 전문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육아종을 시·군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道 역량강화교육 사업의 통일성 추구

[커리큘럼(예시)]

방 법	과 정	세부 내용	교육시간			
			계	강의	컨설팅	자문
계	4개 분야		18	6	8	4
기초 이론교육	1회		2	2		
	- 장애아 통합보육의 특성과 이해	-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 개별화 교육계획(IEP) 작성 방법 및 평가 -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2	2		
소집단 심화교육	2회		4	4		
	-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지원하기 (PBS) 심화교육	- 문제행동의 원인찾기 - 문제행동 지원방법 -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교수방법	2	2		
	- 장애영유아 놀이지원 심화교육	- 장애영유아 놀이지원의 이해와 실제 - 놀이중심의 통합보육	2	2		
소그룹 컨설팅 (워크숍)	4회		8		8	
	-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지원하기 (PBS) 실행 컨설팅	-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실제사례별 전문가 컨설팅 I - 장애영유아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실제사례별 전문가 컨설팅 II	2		2	
	- 장애영유아 유형별 놀이지원 컨설팅	- 장애영유아 유형별 놀이지원 실제적용 사례 컨설팅	2		2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힐링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워크숍	2		2	
슈퍼비전 (순회자문)	2회		4			4
	- 교육생 재직 중인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방문 순회자문	- 개별화 교육계획(IEP) 작성 및 평가 지원 - 부모상담을 위한 준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 준비 지원 - 유형별 교수학습 지원 - 진전도 모니터링 지원	2			2
			2			2

주1) 커리큘럼은 '예시'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용으로 활용, 교육시간은 회당 최소 2시간 이상 추진
 주2) 교육방법, 교육과정, 교육내용은 시·군별 여건에 맞게 수정·가감하여 변경 추진 가능

4-16 어린이집 보육행정실무사 청년인턴 지원 국도비

보육품질관리팀

☎ 8008-2556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입력, 문서작성 등 어린이집 행정업무를 제공하여 보육교사 업무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안심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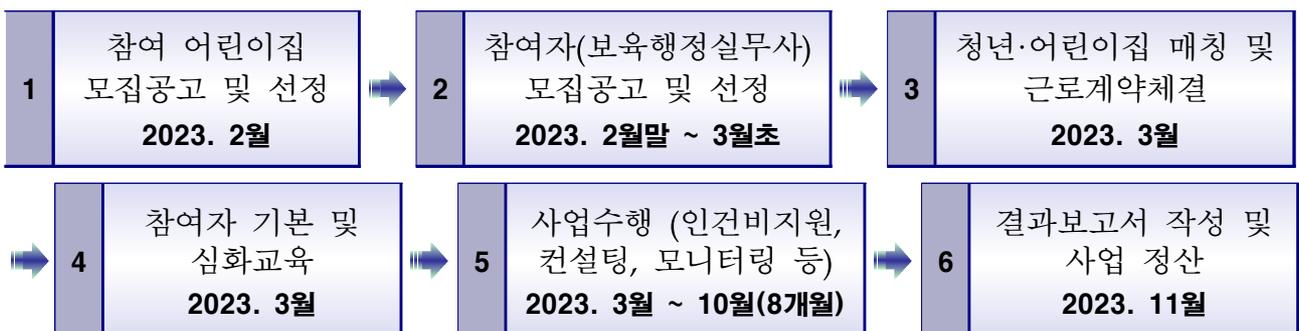
-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월 ~ 11월(10개월) / 단년도 사업
- 사업비 : 216,900천원 (국비 88,320, 도비 128,580) * 어린이집 자부담 15,750
- 수행방법 : 道 직접 (민간위탁)
- 수행기관 : 2개소 (경기도육아종, 경기도북부육아종)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1개소 / 참여자 23명(행정실무사 21, 관리자 2)

□ 사업추진 안내

[추진일정]



[어린이집 모집] 우선순위, 규모, 지역안배 등 종합 고려하여 선정

- (1순위)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
- (2순위) 사업기간 중 평가제 대상 어린이집
- (공 통) 보육행정실무사 인건비 10% 자부담, 4대보험 기업부담금 별도 부담

[참여자(보육행정실무사) 모집]

- (자 격) 도 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보육교사자격증, 컴퓨터, 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주요업무) 어린이집 행정업무(회계, 문서작성, 서류관리 등)
- (근무시간) 1일 4시간 / 주 20시간(월~금 연속근무) / 8개월
- (근무장소) 참여 어린이집

[참여자(관리자) 모집]

- (자 격) 도 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보육교사자격증, 컴퓨터, 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주요업무) 보육행정실무사 지원, 교육 및 상담, 네트워킹 등 사업 수행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 40시간(월~금 연속근무) / 10개월
- (근무장소) 수행기관(경기도 및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 협조]

- '23년도는 시범사업으로 道 직접 추진 후 사업성과 시·군 공유 예정
으로 '24년도부터는 시·군별 공모 신청을 통해 시·군 자체 신규사업
추진 가능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참여유형 : 지역포용형)

Ⅲ. 부 록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현황
 - 보육료 지원기준표·처우개선비 지원표
 - 주요 보육통계표
 - 자치법규(소관조례)
 -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23.1월 현재)

연번	시군명	운영기관	주소	개소일	비고
합 계		33개소(경기도 2개소 / 30시·군 31개소)			
1	경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2003.11.12.	
2	수원시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정자동)	2008.09.01.	
3	수원동부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영통동)	2015.11.20.	
4	성남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복정동 667번지)	1993.03.01.	
5	부천시	서울신학대학교	부천시 계남로 330	1999.07.10.	
6	용인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2015.03.13.	
7	안산시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1994.05.01.	
8	안양시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안양동)	1997.03.12.	
9	평택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평택시 성동로 11길 2(비전동)	2007.10.02.	
10	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시흥시 정왕대로 223번길 37	2006.08.03.	
11	화성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165 3층	2009.08.25.	
12	광명시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2011.01.20.	
13	군포시	안양대학교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2010.01.28.	
14	김포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2014.12.22.	
15	이천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천시 중리천로 34길 38 (중리동)	2006.07.01.	
16	오산시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0	2015.09.01.	
17	안성시	사단법인 에듀케어	안성시 아양로 72, 삼가동 아양NH 6단지	2021.05.06.	
18	의왕시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의왕시 안양판교로 82(포일어울림센터 1층)	2001.01.19.	
19	과천시	사단법인 에듀케어	과천시 별양로 182(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2013.11.01.	
20	광주시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2016.04.27.	
21	하남시	EK보육경영연구소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125 5,6층(풍산동 상아프라자2)	2018.07.01.	
22	여주시	여주대학교	여주시 여흥로160번길 22	2019.10.01.	
23	양평군	사단법인 에듀케어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8번길 7	2021.08.02.	
24	경기북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신곡동)	2008.02.27.	
25	고양시	사회복지법인대건카리타스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2003.04.03.	
26	남양주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106(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내)	2015.07.17.	
27	의정부시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 (의정부2동 572-5)	2007.09.03.	
28	파주시	파주시어린이집 연합회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3층	2012.06.01.	
29	양주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주시 화합로 1426번길 90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3층(덕정동)	2013.04.10.	
30	구리시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2013.11.26.	
31	포천시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207번길 26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내	2018.01.02.	
32	가평군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7	2020.01.01	
33	연천군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연천군 종합복지관 2층)	2023.03.01	

※ 개소예정 시군 : 동두천(‘2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관 현황

[2022. 2월 현재]

연번	교육기관명	원장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총 18개소 (보육교사교육원 6개소, 대학교 12개소)					
1	경기 보육교사교육원	김승태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8	235-2290	
2	수원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박석준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299-7518	
3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구에스더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330-6117	
4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병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899-7075	
5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손채원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750-1542	
6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유현정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740-1313	
7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선애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032-610-0152	
8	성빈센트 보육교사교육원	이종명	부천시 경인로 194, 2층	032-655-0453	
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현혜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496-4796	
10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유빈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400-7096	
11	신안산대학교 사회교육원	이상수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490-6186	
12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	김영애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467-4506	
13	에듀케어 보육교사교육원	이율이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5, 6층	466-3131	
14	한국복지대학교 평생 교육원	임재이	평택시 삼남로 283(장안동)	610-4714	
15	고양 보육교사교육원	박종균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2, 5층	970-8100	
16	경기동부 보육교사교육원	박창준	구리시 검배로 61, 3층	569-9090	
17	경기북부 보육교사교육원	김재환	의정부시 의정로52번길 18, 4층	876-5546	
18	장안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은숙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182	299-3088	

어린이집 보육료 및 가정양육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비 고
어린이집	지원총액 (①+②+③)	국공립 등	514	452	375	280		인건비 30~80% 지원
		민간	1,113	778	795	405	382	
		가정				408		
	정부지원 보육료(①)	국공립· 민간·가정 등	514	452	375	280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시간당) : 영아반 2, 유아반 1, 0세·장애아반 3
	부모부담 보육료(②)	민간	-			125	102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전액지원(도+시·군)
		가정				128		
기관보육료(③)	민간·가정	599	326	221			장애아 653, 방과후 557	
가정양육	부모급여		70	35	-		0~23개월 이하 (22년 출생아부터 지급)	
	가정 양육수당	일반아동		150	100		12~86개월 미만 (21년 출생아까지 지급)	
		농어촌		177	156	129		100
		장애아동		200		100		

처우개선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도 자체사업			국비지원사업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특수근무 수당	처우개선비 추가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교사 겸직원장	처우개선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	교사	영아반 (0~2세)	570	200	80	30	260 *연장보육 전담교사130		
		유아반 (3~5세)	560	110		90		360 *영유아 혼합반260	
	교사겸직원장	155		80			75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등)	교사	영아반 (0~2세)	570	150	80	80	260 *연장보육 전담교사130		
		유아반 (3~5세)	560	110		90		360 *영유아 혼합반260	
	원장	교사겸직 원장	305	150	80			75	
		원 장	150	150					

※ 평가미인증(평가제D) 어린이집의 경우 도비지원 처우개선비 △3만원(누리과정 △5만원)

※ 특수근무수당은 경기도교육원 교육 수료한 영아반 담당교사 지원(영아전문 5만원, 영아전문심화 3만원)

※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 · 치료사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국비) 11만원 추가 지원

주요보육통계

□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22. 12월말)

구분	총 영유아수 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②	유치원 이용 유아수 ③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수 ④=(①-②-③)	
전국(%)	2,204,950(100)	1,095,450(49.7)	552,812(25.1)	556,688(25.2)	
경기도	(%)	654,856(100)	331,516(50.6)	153,149(23.4)	170,191(26.0)
	전국대비%	(29.7)	(30.3)	(27.7)	(30.6)
서울시(%)	345,083(100)	167,427(48.5)	66,524(19.3)	111,132(32.2)	

※ 총 영유아수 : 주민등록통계 만0~6세 / 유치원 이용 유아수 : 교육통계 2022년 4월 기준

□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 : 명/ '22.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30,923(100)	5,801(18.8)	1,254(4.0)	610(2.0)	9,726(31.4)	12,109(39.2)	132(0.4)	1,291(4.2)	
경기도	(%)	9,438(100)	1,326(14.0)	56(0.6)	95(1.0)	3,022(32.0)	4,575(48.5)	64(0.7)	300(3.2)
	전국대비%	(30.5)	(22.9)	(4.5)	(15.6)	(31.1)	(37.8)	(48.5)	(23.2)
서울시(%)	4,712(100)	1,829(38.8)	21(0.4)	84(1.8)	1,043(22.1)	1,405(29.8)	26(0.6)	304(6.5)	

□ 어린이집 정원

(단위 : 명/ '22.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476,686(100)	343,104(23.2)	108,825(7.4)	43,619(2.9)	654,154(44.3)	226,994(15.4)	4,401(0.3)	95,589(6.5)	
경기도	(%)	424,321(100)	88,508(20.9)	4,688(1.1)	7,884(1.8)	212,255(50.0)	86,053(20.3)	2,062(0.5)	22,871(5.4)
	전국대비%	(28.7)	(25.8)	(4.3)	(18.1)	(32.4)	(37.9)	(46.9)	(23.9)
서울시(%)	223,628(100)	103,678(46.4)	1,533(0.7)	4,954(2.2)	65,662(29.4)	25,770(11.5)	805(0.3)	21,226(9.5)	

□ 어린이집 현원

(단위 : 명/ '22. 12월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국(%)	1,095,450(100)	276,670(25.3)	64,503(5.9)	27,743(2.5)	477,628(43.6)	184,053(16.8)	3,203(0.3)	61,650(5.6)	
경기도	(%)	331,516(100)	75,054(22.6)	3,197(0.9)	5,221(1.6)	158,807(47.9)	72,533(21.9)	1,577(0.5)	15,127(4.6)
	전국대비%	(30.3)	(27.1)	(5.0)	(18.8)	(33.2)	(39.4)	(49.2)	(24.5)
	정원충족률	78.1%	84.8%	68.2%	66.2%	74.8%	84.3%	76.5%	66.1%
서울시	(%)	167,427(100)	81,969(49.0)	991(0.6)	3,404(2.0)	47,079(28.1)	21,258(12.7)	597(0.4)	12,129(7.2)
	정원충족률	74.9%	79.1%	64.6%	68.7%	71.7%	82.5%	74.2%	57.1%

□ 특수보육어린이집

(단위 : 명/ '22. 12월말)

구분	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공공형	0세아
전국	12,552	326	177	1,371	160	7,499	135	279	2,286	319
경기도	3,435	39	21	482	6	1,854	34	57	623	319
(전국대비%)	(27.4)	(12.0)	(11.9)	(35.2)	(3.8)	(24.7)	(25.2)	(20.4)	(27.3)	(100)
서울시	2,582	32	8	416	50	1,998	23	55	-	-
(전국대비%)	(20.6)	(9.8)	(4.5)	(30.3)	(31.3)	(26.6)	(17.0)	(19.7)	-	-

□ 보육교직원

(단위 : 명/ '22. 12월말)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기타
전국	311,996(100)	30,773(9.9)	231,304(74.1)	1,510(0.5)	1,018(0.3)	872(0.3)	28,402(9.1)	18,117(5.8)
경기도	91,158(100)	9,380(10.3)	68,154(74.8)	316(0.3)	344(0.4)	299(0.3)	9,776(10.7)	2,889(3.2)
(전국대비%)	(29.2)	(30.5)	(29.5)	(20.9)	(33.8)	(34.3)	(34.4)	(15.9)
서울시	50,946(100)	4,703(9.2)	37,667(73.9)	309(0.6)	161(0.3)	148(0.3)	3,659(7.2)	4,299(8.5)
(전국대비%)	(16.3)	(15.3)	(16.3)	(20.5)	(15.8)	(17.0)	(12.9)	(23.7)

경기도 보육 조례

소관부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제정) 2003-11-26 조례 제 3302호
- (일부개정) 2005-06-13 조례 제 3414호
- (전부개정) 2008-01-07 조례 제 3714호
- (일부개정) 2010-11-08 조례 제 4098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11-01-10 조례 제 4126호
- (일부개정) 2011-03-15 조례 제 4158호
- (일부개정) 2012-01-05 조례 제 4308호
-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3-04-04 조례 제 4530호
-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 4807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 4898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5-07-17 조례 제 4966호
- (일부개정) 2015-11-04 조례 제 5070호
- (일부개정) 2016-05-17 조례 제 5231호
-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 5648호
-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 5718호
- (일부개정) 2019-03-13 조례 제 6103호
- (일부개정) 2020-05-19 조례 제 6630호
- (일부개정) 2020-11-12 조례 제 6827호
- (일부개정) 2022-01-03 조례 제 7271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일부개정) 2022-01-06 조례 제 7326호
- (일부개정) 2022-04-21 조례 제 7411호
-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7495호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3.4.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 ②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4.4.>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9.3.13.>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4.>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필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22.4.21.>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의 등록금 받음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3.13.>
 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9. 중장기 보육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2022.4.21.>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4.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전문개정 2013.4.4.]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전문개정 2013.4.4.]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전문개정 2013.4.4.]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4.4.]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7.7.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 받을 당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 날의 그 다음 날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8.] <개정 2013.4.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7.17.>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4.4.>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4.30.>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하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4.]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5.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11조에 따른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4.4.]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4.4.]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 <개정 2015.4.3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11.8., 2011.3.15., 2015.4.30.>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개정 2015.4.3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5.4.30.>

1.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관리 [신설 2020.05.19.]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12.1.5.>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5. 육아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인력은행 운영

7. 평가제 컨설팅 [전문개정 2020.05.19.]

8.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12.1.5.>

9.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전문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여

10. 보육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

11. 어린이집 현황조사 및 주민 요구도 조사 <개정 2012.1.5.>

12. 놀이지도 사업 [신설 2020.05.19.]

13. 장애영유아, 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신설 2020.05.19.]

14.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5. 영유아 문화공연단 운영을 통한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6. 어린이집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간의 동아리 등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20.05.19.]

18. 그 밖의 영유아 및 아동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개정 2015.4.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 2015.4.30., 2015.11.04.> [단서삭제 2015.11.04.]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육관련단체 관계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1.5., 2015.4.30.>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5.4.30.>
- ⑥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에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5.11., 2015.4.30.>

제14조(비용)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 포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2015.07.17.>

제15조(보육계획)

도지사는 보육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5조의2(0세아 보육 특례) <개정 2015.07.17.>

어린이집 운영자는 만1세 미만 영아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본조신설 2011.1.10.]

제15조의3(역세권 등의 어린이집 설치) <개정 2012.1.5.>

도지사,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버스터미널 등의 인근에 어린이집의 설치를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본조신설 2011.1.10.]

제15조의4(보육료 고시)

도지사는 매년 1월 말 이내에 정부미지원시설(3~5세) 보육료를 결정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본조신설 2012.1.5.]

제15조의5(우수 교재·교구 보급)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작품 등 우수 교재·교구를 우선하여 어린이집에 보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5.]

제15조의6(소아당뇨가 있는 영유아의 우선 선발)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간단하게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17.] <개정 2022.12.30.>

제15조의7(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5조의8(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지원)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와는 별개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 시설 개선비 등 필요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5조의9(장애아 보육 특례)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보육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보육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2.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사업
 3.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 보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22.1.6.]

제16조(교육훈련)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1.]

제17조(보육교직원의 책무)

-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권익을 존중하고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본조신설 2019.3.13.]

제17조의2(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제18조(안전관리)

-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관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사·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3.13.]

제19조(비용의 보조)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1.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 <개정 2013.4.4.>
 2. 휴일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보육지원 사업비 및 장애아·다문화가족 자녀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전문개정 2020.11.12.]
 3.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개정 2012.1.5.>
 4. 삭제 <2022.4.21.>
 5. 삭제 <2020.05.19.>
 6. 0세아 전용어린이집(시장·군수가 선정하여 도의 지정을 받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개정 2013.4.4., 2015.07.17.>
 7. 어린이집의 어린이 집 안전공제회 가입비·공제료 지원 <개정 2012.1.5.>
 8. 교재교구비 지원 [신설 2011.3.15.]
 9.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신설 2013.4.4.]
 10. 보육인대회, 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육아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7.7.17.]
 11.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17. 9.29.]
 1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 및 A형 간염 등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신설 2017. 9.29.]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5.11., 2013.4.4., 2017. 9.29.> >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보육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13.4.4.>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관리감독)

도지사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5.07.17., 2020.05.19.>

제22조(예산지원의 제한 등)

도지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4.12.31., 2015.07.17., 2020.05.19., 2022.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제정) 2021-08-10 조례 제 7157호

(일부개정) 2022-04-21 조례 제 74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계획
 4. 보육교직원의 권익개선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계획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 ① 도지사는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채용시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는지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은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업)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2. 보육교직원의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3. 보육교직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
 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담기구의 업무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보육전문가

3.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

4. 보육교사 대표

5. 학부모 대표

6. 경기도 보육 담당 부서의 국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하되,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8.10.,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제정) 2021-07-14 조례 제 7124호

(일부개정) 2022-04-21 조례 제 74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1.]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영유아 발달 지원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개입에 대한 기본 방향
2.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 및 개입 사업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보육교직원 연수 등)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 및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1.]

제7조(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도지사는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나 사업을 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제정) 2016-02-24 조례 제 5169호

(일부개정) 2022-01-03 조례 제 7271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성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이하“영유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가 바른 성품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등의 인성교육(이하 “인성교육”이라 한다)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기도 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운영
 3.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조달 및 관리 방안
 4.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단계별 추진방향 및 계획
 2. 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방안
 4. 인성교육의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계획
 5.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육교직원 교육 등)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집 인성교육)

-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교육원의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 설치 및 운영)

-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영유아인성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교육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원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2.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3. 어린이집의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보육교직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가정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

도지사는 교육원 운영,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3.>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소관부서: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제정) 2022-01-03 조례 제 72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어린이집 등원 수업이 어렵게 되는 등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재난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제6조(지원 등)

-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보육재난지원금은 보육재난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현금(계좌 이체방식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다), 현물 등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보육재난에 대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도 보육정책과 업무연락처

직책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보육정책과장	윤영미	031-8008-2540	· 보육정책과 업무 총괄
보육정책팀장	김덕선	031-8008-2370	· 보육정책팀 업무 총괄
주무관	윤제왕	031-8008-4718	· 주요회의 및 보육정책 수립 등 현안
주무관	박연아	031-8008-2598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 관리 등
주무관	김새난	031-8008-2799	· 예산, 통계 등
주무관	김현정	031-8008-4720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등
주무관	이건희	031-8008-4725	· 서무, 회계, 표창 등
보육지원팀장	박재철	031-8008-2571	· 보육지원팀 업무 총괄
주무관	오혜정	031-8008-2572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주무관	신성원	031-8008-2574	· 시간제보육 지원 등
주무관	윤은호	031-8008-4715	·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주무관	김세명	031-8008-2573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보육기반팀장	권은희	031-8008-2551	· 보육기반팀 업무총괄
주무관	김신혜	031-8008-2542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주무관	조선래	031-8008-4732	· 직장어린이집 운영, 안전관리 업무 등
주무관	안진석	031-8008-2543	·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
보육컨설팅팀장	안명숙	031-8008-2595	· 보육컨설팅팀 업무 총괄
주무관	김종현	031-8008-2596	·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주무관	남정우	031-8008-4729	· 어린이집 온라인 지도점검 등
주무관	허지수	031-8008-2568	·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설치 운영 등
주무관	홍미라	031-8008-4743	· 어린이집 재무회계 부정 운영 분석 등
보육품질관리팀장	백승미	031-8008-2557	· 보육품질관리팀 업무 총괄
사무관	김순천	031-8008-4733	· 영아 전문교육, 도 시스템 플랫폼 구축
주무관	김태형-	031-8008-2556	· 보육컨설턴트 운영, 국공립 신임원장 교육
주무관	김선주	031-8008-4744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관리
주무관	한정희	031-8008-4726	· 어린이집 평가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023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인 쇄 : 2023년 2월

발 행 : 2023년 2월

발 행 처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게 시 처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전 화 : (031)8008-2598

팩 스 : (031)8008-2549
